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2018. 1.





일/러/두/기

- * 이 사례집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발간 이후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법원의 판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이 사례집에 열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 1390번으로 문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용어의 표기
 -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 '예비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합니다.
 - "<mark>공직선거법</mark>" ···· '선거법' 또는 '법'으로 표기
 - "공직선거관리규칙」' … '규칙'으로 표기
 - '제58조제1항' ···· '제58조제1항' 또는 '§58①'로 표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로 표기

C·O·N·T·E·N·T·S

4	제1장

선거운동이란?

1. 선거운동의 정의	10
2. 선거운동기간	14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16
4. 투표참여 권유활동	20



예비후보자 ·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제1절 평상시 선거운동	24
1.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24
2.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26
3.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28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9
1. 선거사무소	29
2. 선거사무관계자	33
3. 예비후보자 명함	35
4. 예비후보자홍보물	38
5. 어깨띠 및 표지물	40
6. 전화	42
7. 예비후보자공약집	43
제3절 당내경선운동	45
1. 당내경선사무소	45
2. 경선후보자 명함	47
3. 경선홍보물	48
4.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49
5. 중대저하 가사버중르 화요하 업로지사 바시이 다내겨서	5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제4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55
1.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	55
2. 인쇄물 이용	60
3. 시설물 이용	69
4. 어깨띠 등 소품 이용	73
5. 자동차 · 확성장치 이용	75
6. 언론매체 이용	80
7. 전화 · 인터넷광고 이용	84
8. 대담 · 토론회 이용	86
9. 그 밖의 선거 운동	91



선거법상 제한 · 금지사례

제1절 금품 · 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 · 금지사례	96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96
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97
3.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수령 금지	111
4. 당내경선 관련 매수 금지	112
제2절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114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114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117
3.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121
4. 출판기념회 개최	123
5.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	126
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127
7. 호별방문 및 서명 · 날인운동	135
8. 의정활동보고	138
Q. 저다 . ㅎㅂ자이 저채 . 고야에 과하 비교펴가격과이 고표제하 드	1/1/

C·O·N·T·E·N·T·S

제3절 선거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146
1. 각종 집회	146
2.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등	148
3.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150
제4절 공무원 등 불법선거관여행위 금지사례	156
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156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57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161
4.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 금지	164
제5절 단체의 선거운동 및 활동사례	168
1. 단체의 선거운동	168
2.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172
3.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	175
제6절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사례	179
1.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원협의회	179
2. 통상적인 정당활동	181
3. 창당대회 등 개최 제한	183
4. 당원집회 개최 제한 · 금지	185
5.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제한 · 금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교육감선거 관련 특별 제한 · 금지사례

1.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196
2.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 금지	198
3. 교육감선거 관련 주요 특례규정	199



「정치자금법」상 제한 · 금지사례

1.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204
2. 법인 · 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207
3.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209
4.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210
5. 정치자금 회계	211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216
2. 시기별 주요 제한 · 금지사항	217
3.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이해유도 요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21
4. 금품 ·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22
5. 서거버지시고 표사그 지그 미 시고자 시위비증	224





선거운동이란?

- 1. 선거운동의 정의
- 2. 선거운동기간
-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4. 투표참여 권유활동

1. 선거운동의 정의

岡 법규요약

법 §58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 ·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 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Tip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함.

및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적인 모임에서 연장자의 선거에 관한 격려사에 화답하여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한 행위(인천지방법원 1999. 10. 20. 선고 98고합181)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

- ☑ 법회·강론·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알리거나, 주보·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의 동정 란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행위
- ☑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가정집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에서 단순히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이유 등을 구두로(별도 인쇄물 배부 등은 불가) 소개하는 행위
-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 포함)하는 행위
 - →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8회 이내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동창회·동호회 등 개인들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연말연시 인사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내용 포함)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일회성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 →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위법

-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비정규학력 제외)이나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하거나 열차시간표, 무형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을 부수적으로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 특정 선거구역을 주된 배부지역으로 하는 신문사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집필하는 법률상담기사를 그의 직·성명, 사진 등을 게재하여 연재하는 행위
 - → 법 제8조의3에 따른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는 별론으로 함.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음반출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 다만, 행사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위법
- ☑ 후원회가 후원금 기부에 대한 감사의 인사장에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여 선거구만인 후원인에게 발송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자 및 관계자들과 노인복지에 관한 의견 등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
 - →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국회의원을 지지 ·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법상 제한 · 금지되는 시기에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란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취재 · 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 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 법회·강론·설교 등 종교집회를 주관·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인 소속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동정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 ☑ 체육대회의 명칭이나 우승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표기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현장방문 사례 |

● 할 수 있는 사례

- ☑ 기관·단체·시설이나 민생현장에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민원과 관련한 소속정당의 정책이나 자신의 견해·정책적 대안을 단순히 밝히는 행위
- ☑ 시장, 산업현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통상적인 체험활동을 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행위
- ☑ 정책공약의 준비를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
- ☑ 지역의 환경문제 등의 현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위
- ☑ 단체가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강연주제를 선정하고 초청을 받은 입후보예정자가 해당 주제에 대한 강연을 하는 행위
- ✓ 초청받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를 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되는 경우는 위법

☎ 할 수 없는 사례

☑ 단체의 강연회에 초청받아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기간

₩ 법규요약

법 §59

-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8. 5. 31. ~ 6. 12.)를 말함.
- 이 예 외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법으로 허용된 자가 법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가능)

《선거별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2018, 2, 13.(화)부터
-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2018, 3, 2,(금)부터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군수선거: 2018, 4, 1,(일)부터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에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음.



🖳 사례 예시

❷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가 약을 사러 갔다가 약사로부터 그의 남편이 입후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의 처로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8)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2. 10. 24. 선고 92노533)
- 図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 ○○○입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지지를 부탁한 행위(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 10, 28, 선고 2010고합196)
-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집회 참석 주민들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심판하자는 등의 연설을 한 행위(인천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4고합430)
- 図 봉사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모임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강연을 한 행위(부산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노475)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법규요약

법 §58 · §60

-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 · 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 다만, 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②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 ③ 선거권이 없는 자
 -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원 포함),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⑤ 각급 선관위 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 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과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로 위헌(헌재 2016, 6, 30, 2013헌가1)
 - 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⑦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⑧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 ⑨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 다만, 위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위 ④ 내지 ⑧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 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2018, 3, 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법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정당의 내부적인 선거사무에 자원봉사활동(대외적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대책기구 회의에 참석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 행위 등)을 하는 행위
- ☑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 아빠는 컴퓨터도 잘하며, 동생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빠를 도와 주세요"라는 등 수회에 걸쳐 연설을 하게 한 행위(창원지방법원 1996. 5. 9. 선고 95고합415)
-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여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라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04. 10. 19. 선고 2004노1844)

공직선거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내용

[출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개인정보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수집 ·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16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 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제16조에 위반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세대주명단 교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성명,생년월일, 주소
정보통신망(전자우편, 전화, 문자)을 통한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59조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선관위에 신고된 1개 번호로 8회 이하만 가능(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전송한 횟수 포함)
-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20조)
 -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 정보주체가 수집출처 요구 시 필수 고지시항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최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함.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출처고지 요구에 대비하여 수집 단계부터 수집 출처별로 구분 · 범주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21조)
 -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에는 기 수집된 개인정보를 특별한 사유(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에 따라 여론조사 관련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 정보주체의 열람 및 삭제 요청 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35조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삭제 등을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해 주어야 함.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29조)
 -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책임자 공개
 -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30조)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후보자 또는 보좌관)를 지정·공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31조)

4. 투표참여 권유활동

₩ 법규요약

법 §58의2

- 주 체: 누구든지
- 허용행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금지행위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

및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투표참여 권유 및 사전투표제도 홍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정당이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정당의 명의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 광고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선전시설물 앞에서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후보자의 육성녹음으로 투표참여 권유를 하는 행위
- ※ 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버스·지하철을 이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제1절 평상시 선거운동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3절 당내경선운동

제4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1절 평상시 선거운동

1.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법규요약 (법 §59 · §82의4 · §82의5)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단체

○ 기 간: 언제든지

방법: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전송할 수 없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8회를 초과할 수 없음(이 경우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
-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 발송 시에는 '선거운동정보'와 '수신거부' 표시 의무가 없으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예시] 선거운동정보. ○○시장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 1541(또는 080서비스번호나 E-mail 주소) + 예비후보자 · 후보자의 전화번호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유의사항(아래 '3.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도 같음)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누구든지 숫자 ·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 각급선관위(읍·면·동선관위 제외)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및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 ▼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 법 제135조에 의한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 인터넷전화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자동으로 동시에 20명씩 계속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 다만, 휴대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의 주소록에서 20인 이하의 그룹을 미리 설정하여 그룹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개인 간의 사적모임인 추진위원회 명의로 회원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서울고법 2013. 2. 1. 선고 2012노4009)

2.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岡 법규요약

법 §59

○ 주 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

○ 기 간: 언제든지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방 법: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UCC를 게시(광고 제외)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이 자신의 팟캐스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구민, 유명인 등)을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 파일 또는 녹회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거리에서 만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내용(각종 애로사항 또는 지지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제든지 특정 정당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지지 · 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 포털 또는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언제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홈페이지의 URL을 게시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관심, 취미, 개인사 등을 주제로 한 일반유권자와의 대담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행위
- ☑ 당원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 및 미니홈피 등에 소속 정당의 정당명 · 로고로 구성된 통상적인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 ▶ 누구든지(법 제82조의7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이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 図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 전체를 파일로 게시하여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M 법규요약

법 §59 · §82의4 · §82의5

○ 주 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

○ 기 간: 언제든지

● 방 법: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 선거운동정보 작성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전자우편으로 전송가능한 형태라면 무방

○ 전송횟수 : 제한 없음

-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예시] 선거운동정보, ○○시장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E-mail 주소 등)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내용을 리트윗 하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図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외의 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선거사무소

법규요약

법 §60의3① · §61①⑤⑥ · §63① · §112②

- 선거사무소 설치(법 §60의3① · §61①⑤⑥ · §63①)
- 주 체:예비후보자
- 설치장소: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
 - → 다만, 식품접객영업소 ·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음.
 - ※ 교육감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사무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 안에도 설치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 ·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 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사무소의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봄.
-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음.
-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 · 현판 · 현수막 설치 · 게시(법 %60의3① · %1⑥)
- 수량 · 규격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설치 · 게시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불가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음.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 개소식**(법 §112②제2호 카목)
- 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현판식에 참여한 정당의 간부· 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 → 또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 사례 예시

가. 선거사무소 설치

● 할 수 있는 사례

- ☑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간에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 ☑ 천막·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의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여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한 행위(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675)
- ▼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한 행위(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3220)
- 図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계속적 · 반복적으로 공약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



나.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 · 현판 · 현수막 설치 · 게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당 후보자 △△△"라고 게재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 · 명함 등에 미성년자를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 촬영한 사진이나, 예비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는 행위
- ☑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LED전광판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 → 다만, 해당 간판이 녹화기 사용에 이를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위반
- ☑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 및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爻 할 수 없는 사례

- ☑ 예비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실제 함께 활동하였더라도 원본 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인 경우 게재할 수 없음.
-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게재하는 행위

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와 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 ☑ 제한된 범위의 초청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전화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을 발송 · 전송하는 행위

- →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를 지지 · 선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법
-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국회의원 · 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
 - →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함.
-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역별 · 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図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초청을 받은 내빈(국회의원, 일반시민, 지인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 ·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서울고등법원 2013. 3. 8. 선고 2013노302 / 전주지법 2012고합292)
 - → 예비후보자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명함배부 등 법 제60조의3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확성장치 사용 등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음.
-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의례적인 초청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03)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기간 전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행위와 선거기간 중 수차례 후보자를 지지하는 연설을 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13. 3. 8. 선고 2013노302)



2. 선거사무관계자

岡 법규요약

법 §62 · §63 · §135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법** §62①34⑦8)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장 1인과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5명,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3명,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2명 이내)을 둘 수 있음.
 - →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도 선거사무원 선임수에 포함됨.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음.
 - →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표지를 패용하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 장애인 예비후보자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중 ①모든 등급의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②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그 밖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같은 선거에 있어 2이상 예비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 예비후보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을 모집할 수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해임·교체 신고(법 §63①②)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을 선임·해임·교체한 때에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 교체 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음.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는 해당 선관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 표지를 분실한 때에는 분실일시와 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 실비 보상(법 §135①②, 규칙 §59①)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숙박료는 지급할 수 없음)를 지급할 수 있음.
 -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2018. 5. 24.~5. 30.)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구 분					실	н		
		수 당	일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공 운임	자 동 차 운 임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시 ·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70,000원	20,000원	25,000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거, 지역구 지방의원선거	50,000원	20,000원	20,000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30,000원	20,000원	20,000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 ·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을 겸임하는 때에는 지급기준이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1인의 수당 · 실비만 지급

및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문구를 예비후보자나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배부 · 징구하는 때에는 위법

❷ 할 수 없는 사례

- 図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가능
-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을 선임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사무소 설치는 예비후보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3. 예비후보자 명함

₩ 법규요약

법 §60의3①제2호

■ 작성방법

- 배부시기: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 명함규격: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 지질 · 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 제작 가능
 - → 명함은 규격 범위 안에서 하트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 또는 접이식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 법정규격 범위 이내이어야 함.
- 게재사항: 예비후보자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라고 게재할 수는 없음.

■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신고를 하지 않음.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금지
 - →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종이(백상지, 아트지, 재생용지 등), PET재질, 비닐 등 통상 명함으로 사용되는 재질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
 - → 다만, 스웨이드(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는 없음.
- ☑「선거법」및「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 성명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주고받는 행위
 - → 다만,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 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 ☑ 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관공서 등의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위법
- ☑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교황·할머니·어린이·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누구나 입장료 없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 장소에 예비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시물을 착용하고 방문하여 그 업소 본래의 용도로 단순히 이용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 図 예비후보자가 명함에 정규학력(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학력 포함) 이외의 유사학력을 게재 · 배부 하는 행위(예비후보자 홍보물에서도 같음)
- ▼ 후보자등록을 마쳤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하철역 개찰구 안 등 명함배부 금지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図 명함을 호별투입·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행위(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도3062)
- 図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종교시설 안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고합189)
- ☑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인천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고합622)
- 図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예비후보'라고 적힌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노419)
- ☑ ○○사찰의 부속건물인 해탈문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979)
 - ※ 해탈문: 사찰의 정문에 해당되며, 정면계단을 올라가서 기둥 주변의 난간 안의 공간 으로 들어서는 순간 종교시설의 내부에 진입하는 것임.
- 図 00정당 소속 예비후보자가 00정당을 탈당하지 않았음에도 '무소속'이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민 거주자들의 우편함에 투입한 행위(대법원 2015. 3, 27. 2015도2426)
- 図 예비후보자가 여러 종류의 명함을 제작하여 거리에서 여러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행위

4. 예비후보자홍보물

M 법규요약

법 §60의3①제4호

■ 작성방법

○ 종 수:1종

○ 수 량: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규격 및 면수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8면 이내

○ 게재사항

• 앞 면: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으로 표기)

• 맨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 발송방법

○ 기 간: 2018. 5. 28.(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 횟 수: 제한 없음

- →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함. 수회 발송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 시에 일괄 신고할 수 있음.
- 방 법: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따른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요금별납 방법으로 우편발송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지역마다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문안을 게재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법에서 정해진 규격과 면수 이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원형 등 형태로 제작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당대표자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한 사진(서류를 함께 열람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신문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 지역방송 · 신문사, 시민단체, 미용실 · 공인중개사 사무실, 기타 상가 등에 발송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이 지지 · 추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
 - → 그 밖의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 ☑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일부 지면에 의견수렴을 위하여 반송용 우편엽서를 절취형태로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소속 정당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거리에서 배부 또는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의 읍·면·동별로 내용을 달리 제작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 ▼ 우편 수취함에 꽂혀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수거하여 아파트 경비실 휴지통과 재활용처리장에 버린 행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0, 31, 선고 2014고합208)

5. 어깨띠 및 표지물

□ 법규요약 법 §60의3①제5호

○ 주 체:예비후보자

○ 규 격

어깨띠: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표지물: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 게재사항: 기호·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게재 가능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사례 예시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로 제작·사용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여러 개의 어깨띠(또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함께 사용)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한 후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을 방문하여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다만, 확성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 등 선거법상 각종 제한 ·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그 업소의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 ☑ 예비후보자가 아무런 내용이 표기되지 아니한 특이한 복장(요리사, 의사, 산타복장 등)을 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다만, 예비후보자와 수행원이 모두 동일한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
- ☑ 예비후보자가 'Free Hug(프리허그)'라는 문구가 표기된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후 선거구민들과 길거리에서 포옹하는 행위
- ☑ LED 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어깨띠나 표지물에 게재된 문자나 기호 등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제작 · 사용하는 행위
 - → 다만, 녹화기 사용에 이를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위반
-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
 - → 다만, 자전거에는 홍보시설물을 부착할 수 없음.

- 어깨띠에 휴대용 확성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개인용 마이크폰을 부착하여사용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 외에 제3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 図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된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12, 8, 14, 선고 2012고합224)
 - → 다만,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걸거나 몸에 착용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는 무방
- 図 예비후보자가 표지물(피켓)을 노상의 보행자 보호설치대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15, 3, 31, 선고 2015도159)

6. 전화

m 법규요약 법

법 §60의3①제6호

○ 주 체:예비후보자

○ 방 법: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예비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 ☑ 당내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방법인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사용하는 행위
- 図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정당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7. 예비후보자공약집

岡 법규요약

법 §60의4

■ **작성주체: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예비후보자**

■ 작성방법

○ 종 수:1종

○ 수량 및 면수 : 제한 없음.

○ 규 격: 제한은 없으나, 도서의 형태로 작성하여야함.

○ 게재사항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 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
-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의무 게재사항

- 앞 면: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으로 표기)
- 맨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 그 인쇄사를 말함)의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제출 및 배부

○ 제 출 :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2권을 제출

배부방법: 반드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예비후보자(저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자신의 공약집 내용을 그대로 게시(PDF파일 게시)하는 행위
- ☑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서적의 판매방법과 동일하게 서점 ·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이 지지 · 추천의 글을 게재하는 행위
 - → 다만, 그 밖의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광고하는 행위
- ☑ 1인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다량 구입하여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행위
- 図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배달하는 행위
 - → 다만,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통상적인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음.
- ☑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주문이 가능한 배너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제3절 당내경선운동

(당원과 당원이 이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해당 정당의 당한 ·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수의 선거구민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어깨띠, 피켓, 현수막, 모자, 티셔츠 등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음.

1. 당내경선사무소

법규요약

법 §57의3①

- 경선후보자는 당내경선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공중위생영업소 안에 둘 수 없음.
 - 당내경선사무소는 정당의 당사에 둘 수 있음.
- 당내경선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수량·규격에 제한 없이 설치·게시할 수 있음.
 - → 간판·현판·현수막은 애드벌론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형광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사무소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각각 다른 장소에 설치하거나 같은 장소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 ☑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사무소에서 경선운동과 관련 없이 청소·다과접대· 차량운행·경선후보자 경호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 다만, 경선운동의 기획·전략수립·공약개발 등 경선운동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위법

- ☑ 당내경선 신청자가 순수하게 당내경선 준비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개설하는 행위
 - → 다만, 경선운동기간 전에 경선사무소에 간판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는 경우 위법
- ☑ 당내경선사무소의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보고서의 일부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 건물의 3층에 당내경선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현수막을 건물전체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 다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 ☑ 당내경선사무소 현수막에 자신에게 기표한 '당내경선 투표용지 모형' 을 게재하는 행위

- ☑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사무소를 1개소 설치하는 외에 지역별로 경선사무소 또는 경선연락소를 설치하는 행위
- ☑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사무소 1개소 외에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개인사무소 등에서 경선관련 사무를 계속해서 처리하는 등 그 사무소와 구성원의 활동 내용이 경선사무소의 설치 · 운영에 이르는 행위
- ☑ 경선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실제 함께 활동하였거나 원본 사진이 있더라도 원본 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인 경우 게재할수 없음.



2. 경선후보자 명함

법규요약 법 §57의3①, 규칙 §25의2①

○ 배부시기: 경선후보자등록 이후부터

○ 명함규격: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지질 · 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를 제작할 수 있음.

● 게재사항: 경선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배부방법: 경선후보자는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다만, 당내경선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는 이를 배부할 수 없음.

-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선후보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는 자신만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배부금지장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 사례 예시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예비후보자가 명함에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방법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 경선후보자가 관광버스 안 또는 관공서 · 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관공서 · 공공기관 등의 일반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위법

☎ 할 수 없는 사례

▼ 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투표소 주변에서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3. 경선홍보물

법규요약 법 §57의3①②④, 규칙 §25의2②

- 작성자: 경선후보자
- ◆ 량 : 경선선거인수에 3%를 더한 수 이내(단수가 100 미만인 경우 100매로 함)
- 규 격: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면 수:시·도지사선거는 8면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지방의원선거는 4면 이내
- 게재사항: 작성근거,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앞면에는 '경선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하여야 함.
 - → 정당은 경선홍보물 발송일전 2일까지 경선후보자별 홍보물 4부씩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
- 발 송: 정당이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편발송하여야 함.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당내경선 홍보물에 해당 정당의 당원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제3자(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제외)가 경선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 경선기간 중 중앙당 또는 시·도당 홈페이지에 경선후보자가 제출한 전자공보를 게시하는 행위
- ☑ 경선홍보물을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행위



4.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법규요약 법 §57의3①②, 규칙 §25의2③④

○ 주 체:정당

방 법: 경선합동연설회 또는 경선합동토론회

○ 개최장소 : 옥내장소

○ 기타사항: 정당이 정한 바에 의함.

→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옥외를 말함)에 홍보에 필요한 현판과 현수막(10제곱미터 이내)을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 각 2매 이내에서 설치ㆍ게시할 수 있음.

→ 애드벌룬과 기구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 · 게시 금지

○ 신 고: 정당이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정당이 중앙당 또는 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동토론회 및 합동연설회를 생중계하거나 동영상 자료를 게시하는 행위
- ☑ 정당이 개최하는 경선후보자 대담·토론회를 언론기관이 공정하게 취재· 보도하는 행위
- ☑ 언론기관이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방송사 스튜디오(옥내에 한함)에서 개최하고, 이를 방송사가 공정하게 취재·보도하는 행위
- ☑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진행·사회·질문내용의 선정 등 전문적·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가·업체의 도움을 받아 개최하는 행위
- ☑ 정당이 경선운동기간 개시일 전에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해당 정당의

경선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강연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 → 다만, 강연회·간담회에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는 때에는 위법
- ☑ 종합유선방송사가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또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내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공정하게 중계방송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정당이 아닌 행정학회가 경선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실시하는 행위

| 기타 경선운동 관련 사례 |

● 할 수 있는 사례

- ☑ 공천신청자의 대변인이 기자를 상대로 단순히 해당 공천신청자의 정치적 견해 · 공약 등 발표를 대행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경선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 ☑ 당내경선의 선거인단 모집기간 중에 거리에 벽보를 첩부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단 모집을 홍보하는 행위
 - → 정당명칭이 표시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경선선거인단 모집을 홍보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위법
-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홍보를 위하여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기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 ☑ 누구든지 경선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의 지지자들이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조사자에게 경선후보자의 육성으로 녹음된 정견을 들려주는 행위
- ☑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경선선거운동(문자메시지 발송)을 한 행위(광주고등법원 2015. 1. 8. 선고 2014노504)



5.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

법규요약 법 §57의8, 규칙 §25의4

- 요청권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하 '정당'이라고 함)
- 요청목적
 -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 모집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수렴
- 방 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서를 이동통신사별로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
- 요청기한

1) 당내경선: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2) 여론수렴: 여론수렴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 사례 예시

가, 소속 당원 대상 성명, 전화번호 및 책임당원 여부 등 확인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정당이 당원명부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당내경선에 활용하도록 자당 소속 예비후보자에게 제공한 당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하여 당내경선 준비 차원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성명과 전화번호 확인, 당원 또는 책임당원 여부 확인, 당내경선 방식・일정 및 참여 안내를 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법 제60조의3 등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위 "할 수 있는 사례"의 행위를 하면서 해당 예비 후보자를 지지 · 선전하는 행위



나. 전화 이용 당내경선 여론조사 참여 안내 및 지지호소

● 할 수 있는 사례

- ☑ 예비후보자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나 법 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또는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독려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 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독려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図 예비후보자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자신에 대한지지 · 호소를 하는 행위
- 図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독려를 하면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 참여 안내 및 독려 등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하여 법 제57조의8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 받은 날부터 그 당내경선의 선거일(당내경선에서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선투표일)까지 해당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하여 경선 선거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경선일정에 관한 안내, 투표참여 홍보, 경선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図 정당이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법 제57조의8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라,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표명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표명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SNS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표명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퍼포먼스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법 제59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카카오톡 등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또는 가두행진, 시설물 설치 · 게시, 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표명하는 행위

마.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유도하는 행위
- ▶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용답하거나 이를 지시 · 권유 · 유도하는 행위



제4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

- 1. 선거운동기구(법 §61①⑤⑥ · §63①)
- 설치권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 설치수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소
 -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
 - 시·도지사후보자 및 교육감후보자: 선거사무소 1개소. 구·시·군(하나의 구 · 시 · 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 자치구·시·군의 장후보자: 선거사무소 1개소, 하나의 구·시·군이 2이 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 지방의원선거
 - 지역구후보자: 선거사무소 1개소
 - 비례대표 추천 정당: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 · 시 · 군의원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 · 시 · 군마다 각각 선거사무소 1개소

○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 영업소 안에 둘 수 없음.
 - → '식품접객영업소'란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을, '공중위생 영업소'란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 · 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을 말함.
 - ※ 교육감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사무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 안에도 설치할 수 없음

-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 선거사무소 포함)에 설치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구· 시·군의 구역 안에 있는 때에는 그 다른 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음.
 -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함).

○ 기 타

- 정당 ·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 ·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신고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의 개소식 · 간판 게시식 ·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 · 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 연락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법 §112②제2호 카목).
 - →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법 §112②제1호 마목).
 - →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 경우 후보자 신분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수 없음.
- 2. 선거사무관계자 (법 %2①2④5⑦8·%3①2·\$135①2, \$2052④, 규칙 \$59①)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명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명을 두어야 함.
-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각각 회계책임자 1명을 두어야 함.



• 선거사무원수

구 분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시 · 도지사 선거(교육감 선거 포함)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수 이내로 하되, 최소 10인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 이내
자치구ㆍ시ㆍ군 의 장선거	선거사무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의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 이내(선거 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 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음)
시 · 도의원 선거	• 지역구 : 10명 이내 • 비례대표 : 구 · 시 · 군의 수 이내 로 하되, 최소 20인	해당 없음
자치구 · 시 · 군 의원선거	• 지역구 : 8명 이내 • 비례대표 : 읍 · 면 · 동의 수 이내	해당 없음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원이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 법정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실비 외에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 → 활동보조인(장애인 후보자에 한함)도 선거사무원수에 미산입
-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정당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 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 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명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음.
 - → 선거벽보 · 선거공보 등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는 모집 가능
- 정당 · 후보자 ·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을 선임 · 해임 또는 교체한 때 지체 없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따로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장의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봄.
-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이내임.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 회계책임자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 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도 표지가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에게는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 실비 지급기준(숙박료는 지급할 수 없음)

		실비					
구분	수당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운임
시 · 도지사선거, 교육감 선거, 비례대표시 · 도의 원선거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포함)	70,000원	20,000원	25,000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 거 및 지역구시 · 도의원 선거 및 자치구 · 시 · 군 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포함)	50,000원	20,000원	20,000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시 · 도지사선거 및 교 육감선거의 구 · 시 · 군 선거연락소장, 자치 구 · 시 · 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포함)	50,000원	20,000원	20,000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30,000원	20,000원	20,000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실비는 해당 회계책임자가 속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수당·실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함.
-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을 겸임하는 때에는 지급기준이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1명의 수당·실비만 지급



🖳 사례 예시

가. 선거운동기구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 선거운동과 관련 없이 순수하게 잡무처리(차 대접, 청소 등)를 담당하는 노무자를 두고 역무제공에 대한 통상적인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위
- ☑ 주택이나 아파트에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입구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나타내는 윗옷, 모자, 어깨띠를 착용한 홍보마네킹을 설치하거나 홍보마네킹에 녹음된 홍보문구 등을 부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나. 선거사무관계자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사무원들이 후보자나 정당의 지원 없이 각자가 필요한 실제 비용을 공평하게 갹출하여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취사를 하는 행위
 - → 다만. 공동취사를 명목으로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위법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선임·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를 후보자가 선거일까지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재신고하여야 함. 다만,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는 재신고하지 않아도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로 봄.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신고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인쇄물 이용

岡 법규요약

법 §60의3 · §64 · §65 · §66 · §93

- 1. **후보자의 명함**(법 §60의3 · §93①)
- 배부주체 등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각각 독립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후보자가 지정한 1명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배부시기: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 ~ 6. 12.)
- 규격: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 지질 · 종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게재사항: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예비후보자와 달리 호별방문하여 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부를 금지하는 장소는 없음.
- 2. **선거벽보**(법 §64)
- 작성 · 제출자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
- 규격 · 지질 · 종수 : 길이 53cm 너비 38cm, 100g/m²이내의 종이, 1종
- 게재내용: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물사진은 제외)
 - →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함) 등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 해당 선거구선관위는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출시기 등

- 제출시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2018, 5, 30,)까지
- →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첩부하지 않음.
- 제 출 처 : 관할 구 · 시 · 군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
- 첩부시기: 선거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2018, 6, 1,)까지
 - → 다만, 섬 및 산간오지 지역은 2018, 6, 2,까지 첩부
- 3. 선거공보(법 §65)

책자형 선거공보

- 작성 · 제출자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그 추천 정당)
- 규격 · 종수 등
 - 규격 · 종수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1종
 - 면수: 12면 이내(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선거), 8면 이내(지방의원선거)

○ 게재내용

- 앞면에 명칭('책자형 선거공보') · 선거명 · 선거구명 게재
- 후보자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작성(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제외)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함.

- 재산상황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각 재산총액
- 병역사항: 후보자 및 그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 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질병명,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외)

-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 및 완납시기(제출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
- 전과기록 : 후보자 본인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죄명(실효된 형 포함)과 형량 및 그 처분일자
- 직업 · 학력 · 경력 등 인적사항 :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 → 책자형 선거공보를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시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됨.

○ 제출 및 발송시기(점자형 선거공보도 동일)

구분	제출(배부지역 관할 구 · 시 · 군선관위에)	발송(우편)			
공보발송 신청자용		선거일 전 10일(2018. 6. 3.)까지 우편발송			
거소투표 신고인용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2018, 6, 1,)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 (2018, 6, 3,까지)에 동봉			
매세대용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 (2018. 6. 3.까지)에 동봉			

○ 접수 거부 사유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 제외)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한 경우
-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경우
- 규격 · 제출기한을 위반한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 작성·제출자: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그 추천 정당)
 - →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규격 · 종수 등

• 규격 · 종수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1종

• 면 수: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면수 이내

○ 게재내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함.
 - →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2면에 게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 3, 4면에 계속하여 게재 가능
- 앞면에 선거명 · 선거구명 · 후보자성명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게재

4. 선거공약서(법 §66)

작성주체: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후보자

○ 규격 · 종수 등

- 규격 · 종수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1종
- 면 수:16면 이내(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12면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게재내용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 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함.
- 후보자의 성명·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1면 이내에서만 게재 가능함.
-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소속정당명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으로 표기)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 뒷면에는 작성근거('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및 인쇄소의 명칭 · 주소 · 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 후보자와 그 가족(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음.

- →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외)·호별방문·특정 장소에 비치·살포의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음.
- 배부일 전일까지 선거공약서 2부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함.
- 선거공약서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및 사례 예시

가. 후보자의 명함

● 할 수 있는 사례

- ☑ QR코드에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 정당·(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 정당로고, 정당 명칭, 선거대책기구에서의 직위를 게재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주고받는 행위
- ☑ 후보자의 명함이나 선거벽보 귀퉁이에 조그맣게 LOOKEY 마크를 인쇄하여 스마트폰의 LOOKEY APP으로 해당 후보자의 동영상을 자동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선거구민들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함께 다니거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된 1명이 되는 경우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 선거구 내 아파트 계단에 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명함을 살포하는 행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8, 9, 선고 2012고합245)
- 図 명함과 거리현수막에 졸업당시의 학교명이 아니라 변경된 현재의 학교명을 게재하여 배부·게시한 행위(대전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고합385)
- ☑ 후보자가 소속된 산악회의 회원이 후보자를 도와주기 위해 노상에서 명함을 땅바닥에 뿌린 행위(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고합200)
- ☑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회장 역임과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로 표기한 명함을 배부한 행위(대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도15530)

나. 선거벽보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게재하는 행위

법 제64조제1항 '정규학력'이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학교 즉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원, 각종학교를 졸업, 중퇴, 수료, 수학하거나 재학 중인 이력만을 말함.

- ☑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선거벽보에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학교 학력은 게재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벽보·선거공보에 명예졸업 사실을 수학기간과 함께 게재[예 : ○○대학교 ○○과 3년 제적(명예졸업)]하는 행위
- ☑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표기하고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행위
- ☑ 선거벽보 등 경력 란에 명예박사, 명예교수, 객좌교수 등을 게재하는 행위
- ☑ 당선무효판결 이전의 의원직 보유기간을 경력으로 게재하는 행위
- ☑ 선거벽보에 게재하는 후보자 사진의 배경으로 새들이 비상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벽보에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벽보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후보자의 뒷모습이나 기호를 표시하는 손가락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벽보에 후보자 본인만이 찍힌 다른 사진 2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
- ☑ 선거벽보 · 선거공보에 NFC 칩 부착 및 QR코드 삽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상적인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취급 과정에서 NFC 칩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벽보에 후보자가 어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벽보에 군중이 운집한 배경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
- ☑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선거벽보에 경력으로 게재하는 행위
 - →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을 사실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함.
- ☑ 선거벽보의 학력란에 폐교된 학교의 학적부를 관리하는 학교명을 학력으로 게재하는 행위(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52)
- ☑ 일부 후보자와의 단일화와 2,000여명의 여론조사결과만을 가지고 '○○도민추대 단일후보'라는 내용으로 선거벽보 등에 게재한 행위(대법원 2015. 3. 13. 선고 2015도640)

다. 선거공보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선관위가 공고한 후보자의 병역사항, 재산세·소득세 납부실적, 전과기록을 선거공보에 사실대로 비교하여 게재하는 행위
- ☑ 무소속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보에 과거 정당활동 경력 및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의 활동사진, 악수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공보에 타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점자가 혼용된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제출하는 행위

- ☑ 선거공보를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구민들에게 임의로 배부한 행위(서울고등법원 1995, 12, 29, 선고 95노2832)
- ☑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에 "매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행위(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4388)
- ☑ 선거공보에 유사학력인 '○○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 게재한 행위(부산지방법원 2000, 9, 22, 선고 2000고합544)
- 図 후보자정보공개자료란에 배우자의 체납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게재한 행위(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6. 8. 4. 선고 2006고합72)
-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란에 일부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형은 기재하였으나 죄명과 확정일자를 게재하지 아니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6. 9. 21. 선고 2006고합36)
- 区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게재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합346)
- ☑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죄명만 게재하고 '선고형 및 확정일자'를 게재하지 아니하여 군의원 재직 중 범죄를 알 수 없도록 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9. 25. 선고 2014고합156)
- ☑ 시간강사로 근무하였을 뿐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수경력으로 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에 게재한 행위(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11. 20. 선고 2014고함32)
-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수량을 초과하여 선거공보를 인쇄·제공하는 행위 및 공고수량을 초과한 선거공보를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하여 상가 등에 배부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합486)
- 区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음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학생회장(전)'이라고 게재한 행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350)

라. 선거공약서

● 할 수 있는 사례

- ☑ 후보자가 E-mail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면서 선거공약서를 함께 전송하는 행위
- ☑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선거공약서를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에 투입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공약서에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3. 시설물 이용

₩ 법규요약

법 §61 · §67

- **1.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 선거대책기구의 간판 · 현판 · 현수막** (법 §61⑥)
- 주 체: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선거대책기구는 정당(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한함.

○ 설치시기

- 선거사무소 : 후보자등록(2018. 5. 24.~25.) 후 부터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그대로 사용할 경우 예비후보자등록 후 게시한 간판 등 사용 가능
- 선거연락소 : 선거연락소 설치 · 신고 후부터
 - → 선거기간개시일(2018. 5. 31.) 전에 선거연락소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신고한 경우 그 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
- 선거대책기구: 선거운동기간개시일(2018. 5. 31.)부터

○ 게시방법 등

- 수량 · 규격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설치 · 게시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 게시할 수 없음.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 · 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 · 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 · 게시할 수 있음.
- 정당의 당사 게시 간판 · 현판 · 현수막(법 §145, 규칙 §47의2)
- 주 체: 정당(해당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제외)
- 게재내용: 선거기간 중에는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해당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에 관한 사항

- →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 게재 불가
- →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간판 등과 선거벽보 등 첩부 가능
- 정당선거사무소 게시 간판 · 현판 · 현수막(법 §61의2)
- 주 체:정당선거사무소장
- 게재내용
 - 정강 · 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
 -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 · 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게시방법 등

- 수량·규격 제한이 없으므로 정당선거사무소 외벽면 또는 옥상에 자유로이 설치·게시할 수 있음.
-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수없음.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 · 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 · 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 · 게시할 수 있음.
- 후원회사무소 게시 간판(법 §145)
- 설치시기 : 후원회 운영기간 중
- 설치장소 : 사무소 1개소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 게재 불가
- **2. 거리게시용 현수막**(법 §67)
- 주 체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제외)
- 설치시기: 선거운동기간개시일(2018, 5, 31,)부터
- 재질 · 규격 등 : 천으로 제작하되, 10㎡ 이내에서 읍 · 면 · 동마다 1매



○ 게시방법

-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첩부·게시하되, 오·훼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첩부·게시함.
- 일정한 장소 · 시설에 고정 게시하되, 애드벌룬 · 네온사인 · 형광 그 밖에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 · 신호기 ·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는 방법,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 사례 예시

가,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 선거대책기구 간판 · 현판 · 현수막

● 할 수 있는 사례

- ☑ 형광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네온사인 기타 전광에 의한 방법(해당 간판 등을 비추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 포함)으로 설치하는 행위
- ☑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 현수막에 다른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부각하거나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 등을 게재하는 경우

- ☑ 현수막에 다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부각시키거나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게재하는 행위
- ☑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나. 거리게시 현수막

● 할 수 있는 사례

- ☑ 현수막에 후보자의 기호 · 성명 · 소속 정당명을 두 번씩 게재하는 행위
- ☑ 장소를 옮겨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일에는 현수막을 이동 게시할 수 없음.
- ☑ 같은 크기·도안·내용의 현수막 두 장을 앞뒤에서 볼 수 있도록 양면으로 제작하여 한 장의 현수막처럼 사용하는 행위
- ☑ 정당 대표자 등과 함께 활동한 장면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현수막을 천이 아닌 비닐이나 다른 재질로 제작하는 행위
- ☑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1개의 읍·면·동에 2매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부산지방법원 2006. 10. 24. 선고 2006고합586)
- ☑ 현수막을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한 행위(전주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고합375)



4. 어깨띠 등 소품 이용

- 주 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 사용기간: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 6. 12.)
 - →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어깨띠와 표지물만 착용
- 종류 및 규격(금액)
 - 어깨띠: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윗 옷: 개당 단가 3만원 이내
 -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운동을 위한 모자 · 티셔츠의 외관 ·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 ☑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에 정당명, 후보자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 · 그림 등을 삽입하는 행위
- ☑ 섬유 · 고무류 기타 재질을 이용하여 사람 모양 · 지역 상징물 · 동물 모형으로 만든 마스코트 모형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선거사무원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정보를 보여 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다만, 동영상 표출 등 녹화기의 사용에 이르는 행위는 위법
- ☑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이 어깨띠나 소품 등을 착용하고 시내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어깨띠에 표시하는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전자 발광 소재로 제작하여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LED 홍보판에 동영상을 표출하거나, 통상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벗어난 복합 LED 홍보판을 사용하는 행위
- ☑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벗어난 풍선 형태의 디지털 영상홍보 장치를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행위
 - → 동영상을 표출하는 때에는 선거법 제100조(녹음기등의 사용금지)에도 위반
- ▼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의 연설 중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인원에게 불꽃놀이 용품을 나누어 주면서 "불꽃놀이 용품에 불을 붙여서 흔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게 한 행위(부산지방법원 2010. 10. 26. 선고 2010고합577)
- ☑ 무인비행장치(드론, drone)에 자신의 기호·성명·선전문구 등에 게재된 표시물 또는 선전물을 부착하여 이를 날리는 행위
 - → 공중에 띄운 무인비행물체와 연결된 끈을 몸에 붙이는 경우에도 불가



5. 자동차 · 확성장치 이용

₩ 법규요약

법 §79 · §91 · §102 · §216①

- 1.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법 §79·§102·§216①)
- 주 체: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제외)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
 소장 · 선거사무원 및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 시 기: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6, 12,)
- 내 용: 소속 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연설 · 대담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 다만,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연설 · 대담을 하는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수량 등
 - 시 ·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 · 각1조
 -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및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거 : 후보자마다 1대 · 1조
 -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 후보자마다 자동차1대와 휴대용 확성 장치 1조(\$216①)
 -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차량부착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대담을 할 수 없음.
 - → 녹화기 화면규격 제한
 -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용 10㎡ 이내, 구·시·군선거 연락소용 5㎡ 이내
 -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거 : 5㎡ 이내
 - 지역구지방의원선거: 3m² 이내
-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사용 등
 - 확성장치는 연설 ·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 · 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곳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해당 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하여야 함.
- 후보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음.
- 후보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이 연설 · 대담을 하는 때(연설 · 대담을 하기 위하여 연설 · 대담용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음.

여성금지장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 시설
 - →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무방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Tip

- 다른 후보자의 연설·대담장과 거리제한은 없으나, 소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후보자의 연설·대담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아파트단지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그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형사책임 문제는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님.

2. 선거벽보 등 첩부용 자동차 · 선박(법 §91)

- 주 체: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 시 기: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 6, 12,)

○ 수 량

- 시 ·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 · 5척 이내
-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거 : 후보자마다 각 5대 · 5척 이내



-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 후보자마다 각 2대 · 2척 이내
-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 후보자마다 각 1대 · 1척 이내
 - → 관할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함.
- 내 용: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를 자동차마다 각 5매(선박은 각 10매) 부착 가능

🖫 사례 예시

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

● 할 수 있는 사례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선거벽보·선거공보, 후보자의 사진, 정견·정책·선전구호 등을 그림(캐리커처 포함)이나 문자의 형태로 게재하는 행위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녹음기 및 녹화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할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표지를 붙여야 함.
- ☑ 홍보영상 배경음악 또는 로고송에 일반 대중가요 등 기존의 음원을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
- ☑ 공개장소 연설 · 대담 차량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후보자의 사진 외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당의 대표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후보자가 참여한 활동내용을 녹화물로 제작하여 방영하는 행위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녹화기로 후보자 영상물을 방영할 경우 화면 오른쪽 하단에 수화통역을 방영하거나 후보자가 연설하는 경우 수화통역사가 함께 탑승해서 수화통역하는 행위
- ☑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일정을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행위
 -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위법

-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는 행위
- ☑ 전문성우의 음성으로 후보자의 공약 · 경력 등을 안내 · 설명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녹음물을 녹음기 · 녹화기를 사용하여 방송하는 행위
- ☑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전문연예인이 아닌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로고송을 함께 부르거나 로고송에 맞추어 함께 율동을 한 행위(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 할 수 없는 사례

- ▶ 비정규학력을 공개장소 연설 · 대담장소에서 녹화물을 통하여 방영하는 행위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허위사실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부착용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 외에 별도로 확성장치를 녹음기·녹화기에 설치하는 행위
 - → 연설·대담용 차량의 크기나 톤수. 확성장치의 출력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 ☑ 선거일에 선거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투표소 옆에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을 주차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노3155)

나. 선거벽보 등 첩부용 자동차 · 선박

● 할 수 있는 사례

- ☑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그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 → 다만, 그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를 벗어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위법



☎ 할 수 없는 사례

- ☑ 법 제외조에 따른 자동차에 선거벽보 ·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 ☑ 영업중인 여객선을 법 제외조에 따른 선박으로 사용하는 행위

6. 언론매체 이용

법규요약 법 §69 · §70 · §71 · §72 · §73 · §74

- 1. **신문광고**(법 §69)
- 주 체: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 일간신문을 말함)
- 기: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2018. 5. 31.~ 6. 11.) 이 시
- 횟 수: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 마다 1회를 더한 수

○ 광고내용

- 소속 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 색도 및 규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광고근거('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함.

○ 광고절차

- 신문광고 전에 관할 선거구선관위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 게재
- 일간신문 경영·관리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광고를 게재할 수 없음.
- 2. **방송광고**(법 §70)
- 주 체: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 매 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포함)을 말함.
- 시 기: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 6, 12.)
- 횟 수: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 이내



○ 광고내용 및 방송일시 통보

-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속 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방송시설 경영자는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방송광고의 일시와 내용 등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통보해야 함.

3. **후보자의 방송연설**(법 §71)

○ 선거별 연설횟수 등

구 분	연 설 자	1회 연설 시간	연 설 횟 수
시 · 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각 10분 이내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각 5회 이내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거 후보자		10분 이내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2회 이내
정당별 비례대표 시 · 도의원선거구마다 당해 선거의 후보자 중 에서 선임된 대표 1인		10분 이내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각 1회

○ 시 기: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6, 12,)

○ 연설내용

- 소속 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경우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 포함)·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후보자는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방송일 전 3일까지 이용할 방송시설명 등을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법 §72)
 - 주 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 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포함)을 말함.

○ 시 기: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6, 12,)

● **연설자**: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추천정당이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 자)

회 수 : 제한 없음

• 내 용: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

→ 이 경우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선거구단위로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연설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경력방송**(법 §73)

○ 주 체: 한국방송공사(KBS)

○ 시 기: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6, 12,)

○ 방 법: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 이용

○ 선거별 방송횟수 등

구 분	1회 방송시간	방송횟수		
시 ·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2분 이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3회 이상		
자치구 · 시 · 군 의장선거	2분 이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상		

- 방송내용 : 후보자의 사진 · 성명 · 기호 · 연령 ·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 직업 기타 주요 경력
- 경력방송 원고 제출
 -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2018. 5. 25.)까지 원고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제출
 - →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봄.
 - 후보자가 원고제출마감일까지 경력방송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하여 송부함.



- 경력방송 원고는 100자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넘는 부분은 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구두점 그 밖의 문장부호도 자수로 산입함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법 §74)
- 주 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
- 시 기: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6, 12,)
- 횟 수: 제한 없음

🖫 사례 예시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법 제70조부터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제공하는 방송광고·방송연설·경력방송을 동시에 재송신하는 행위
- ☑ 방송사가 선거법 제71조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 동영상을 다른 방송영상물과 같은 방법으로 자사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

7. 전화 · 인터넷광고 이용

법규요약 법 §82의4 · §82의7 · §109②

- **1. 전화**(법 §82의4)
- 주 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시 기: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 6. 12.)
 - →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방 법: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법 제109조②).
- 2. **인터넷광고(**법 §82의7)
- 주 체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후보자 추천 정당을 말함)
- 매 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 시 기: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 6. 12.)
 -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인터넷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방 법
 -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 · 광고주명 및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 인터넷광고의 형식 · 크기(용량) · 규격은 제한 없음.

및 사례 예시

가. 전화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자신의 로고송을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선거운동원 및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안녕하십니까? 연기자 ○○○입니다. ㅁㅁㅁ 후보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등)를 후보자의 휴대전화, 선거사무소 대기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 ※ 송화자가 직접 통화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 정보를 들려주는 행위
-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가 아닌 장소에 새로이 전화를 가설·증설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나. 인터넷광고

◎ 할 수 있는 사례

- ☑ 후보자가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
- ☑ 후보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구매하여 키워드검색으로 "○○○후보"검색 시 "○○후보"가 검색되고 그곳을 클릭하였을 때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
- ☑ 인터넷언론사가 아닌 트위터 · 페이스북 홈페이지, 손바닥TV, ㈜판도라TV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 ☑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 ☑ 인터넷뉴스운영자가 그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하단 "후보자"란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함 앞・뒷면을 스캔하여 사진과 약력을 배너로 제작・게시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한 행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1, 7, 선고 2014고합108)

8. 대담 · 토론회 이용

M 법규요약

법 §81 · §82 · §82의2

- 1.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법 §81)
- 주 체ː단체

|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 |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 시 기: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6, 12,)
- 초청대상자: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하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함.)[이하이 표에서 '후보자 등'이라 함.] 1인 또는 수인
- 개최신고
 -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 또는 개최장소 관할 구·시· 군선관위에 초청 후보자 등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 신고
 - 1명 또는 2명 이상의 후보자 등을 먼저 초청하여 대담 · 토론한 다음에 나머지 후보자 등을 초청하거나, 1회에 1명 또는 2명 이상의 후보자 등이 참석하여 순번에 따라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맨 먼저 개최할 대담 · 토론회 개최신고 시에 개최계획을 함께 제출



○ 유의사항

- 옥내에서 개최하되. 개최장소는 공개되어야 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 · 인쇄물 기타 선전물을 설치 · 게시 · 첩부할 수 없음.
- 모든 후보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담 · 토론회를 진행할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참석한 모든 후보자 등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함.
-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타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 사생활에 대한 비방,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한 비하·모욕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함.
- 대담 · 토론회 개최비용은 주최하는 단체가 부담하여야 함

2.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법 §82)

- 주 체: 언론기관[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 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 언론사]
- 시 기: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6, 12,)
 -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는 선거일 전 60일(2018. 4. 14.)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18. 5. 30.)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개최 가능
- 초청대상자:후보자 또는 대담 · 토론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후보자가 지정하는 자)
- 초청 및 진행
 - 언론기관이 방송시간 · 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 · 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 · 토론자 1명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안 됨.
- 후보자 또는 대담 · 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 · 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 토론회(법 §82의2)

- 개최주체 및 횟수 등
 - 시 ·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 시 ·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되, 후보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되,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제외)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거 : 구 · 시 ·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를 초청 하여 1회 이상
- 시 기: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 6, 12,)
- 방 법: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한함)
 - →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배정
- 초청대상자 :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라 초청 대상 선정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방송하게 하고,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례 예시

가.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

● 할 수 있는 사례

- ☑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 토론회 개최장소에 일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행위
- ☑ 대학교 학생회가 후보자 등 초청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천명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하여금 중계방송하게 하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공무원노동조합이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도 선거기간 전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

❷ 할 수 있는 사례

☑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언론기관이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단순한 전화·신문지상 인터뷰(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방문 또는 화상인터뷰, 인터넷 문자통신, 동행 취재는 법 제82조의 대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거나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 ☑ 대담 · 토론회 진행 중 표본오차율이나 응답률 등을 산출할 수 없는 실시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하는 행위
- ▶ 방송사가 대담·토론회 진행 중에 참석 후보자를 지지·격려 또는 응원하는 선거구민의 메시지를 방송하는 행위



9. 그 밖의 선거운동

₩ 법규요약

법 §105① · §106②

1.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시 기: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 6. 12.)

선거운동방법(예시)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법 \$79)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법 §82의4)
-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법 §93)
-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및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법 §106)
- 정당의 사무소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를 보조하는 행위
 - →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방법 제외) · 인터넷홈페이지 ·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 위탁 발송 제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함.
- 누구든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법 §135③).
 - →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후보자 · 예비후보자가 관할 구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시 ·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15명,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거는 10명,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5명 이내)는 1만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음.

2. 거리인사에 의한 선거운동(법 §105①)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시 기: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6, 12.)

○ 방 법

-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 이내의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면서 선거운동(보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손가락 활용 등)을 할 수 있음.
 - →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음.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호(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할 수 있음.
- 3.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법 §106②)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시 기: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6, 12.)
- 장 소: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 시장 · 점포 다방 ·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 방 법:선거법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지호소

🖳 사례 예시

가,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운동기간 중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를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 제89조 등에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그 대가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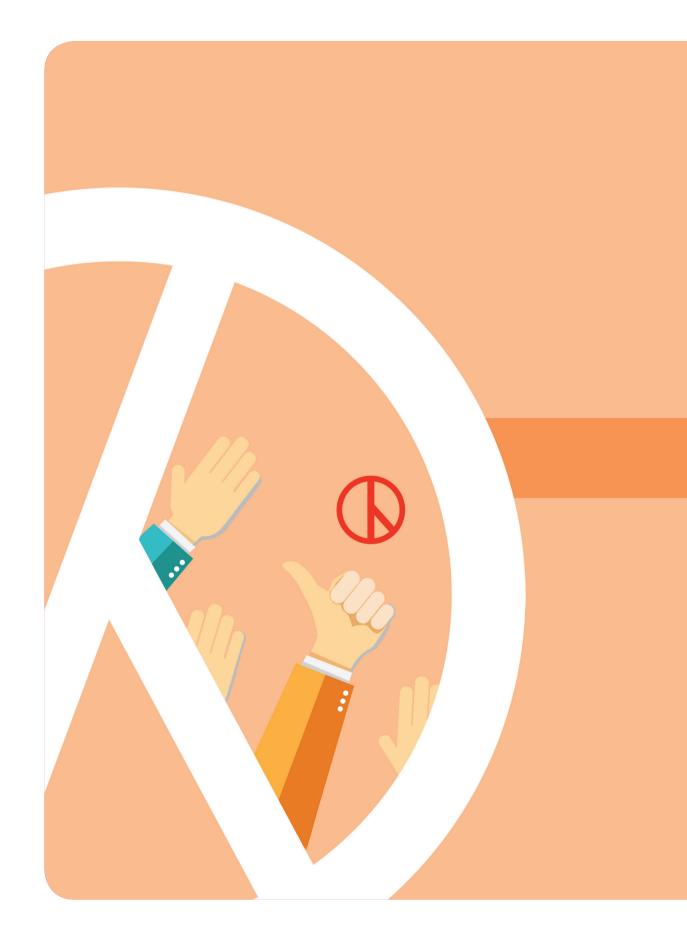
나. 거리인사에 의한 선거운동

❷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 중 5명 1조(후보자가 포함된 경우 10명 1조)가 되어 공연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순히 장구와 북을 치면서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 10명으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2명 1조로 열을 지어다니며 "○○○ 부탁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고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게한 행위(창원지방법원 1995, 12, 7, 선고 95고합370)
- ☑ 수십 명이 도로 양측으로 줄을 지어 따라 오게 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후보자의 이름을 선창하고 선거사무원들이 후창하게 한 행위(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 6. 13. 선고 2012고합21)
- ☑ 선거사무원 등 총 20여명이 특정후보 이름이 게재되어 있는 점퍼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사무소 앞부터 특정건물까지 수백 미터 거리를 무리를 지어 행진 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4고합213)





선거법상 제한 · 금지사례

제1절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사례

제2절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제3절 선거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제4절 공무원 등 불법선거관여행위 금지사례

제5절 단체의 선거운동 및 활동사례

제6절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사례

제1절 금품ㆍ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사례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법규요약 법 §47의2

-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법 §47의2)
-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

- 간주규정
 - 주 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기 간 :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2018. 1. 14 ∼ 8. 12)
 - 행 위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 구 · 시 · 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국회의원등"이 라 함),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 제자매에게 채무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의 이익제공을 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봄.

- → 예외: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 기부. 당비 납부는 무방함.
- 벌 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자 피선거권 제한(법 19)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는 피선거권이 없음.



🔯 사례 예시

❷ 할 수 없는 사례

- 図 정당의 대표자가 A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A, B로부터 합계 17억 원을 제공받고, C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15억 1천만원을 제공받은 행위(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 ☑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한 후,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부터 당선이 가능한 앞 순위의 추천을 약속 받고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행위(서울고법 2013. 5. 10. 선고 2013노1050)
-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지역구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소속 정당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비례대표후보자로 공천받아 당선되는 등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행위(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9515)
- 図 예비후보자가 지역구후보자 공천을 받지 못하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자신의 측근을 통해 공천심사위원에게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하고, 같은 정당의 전(前)대표에게도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시장 후보의 공천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배우자에게 ○○시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경선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1억원을 교부한 행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374)

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법규요약

법 §112 · §113 · §114 · §115 · §116

- **1. 기부행위의 개념**(법 §112)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
-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상관없으며, '기관·단체·시설'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민법」상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단체로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함.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일정한 혈연적 ·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는 사유는 불문함.
-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위반죄는 성립됨.

2. 주체별 제한내용(법 §113 · §114 · §115 · §116)

조문	주 체	제 한 기 간	주관적 요건	제 한 내 용
법 §113	국회의원 · 지방의원 · 지방자치 단체장(교육감 포함) · 정당의 대 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와 그 배우자	상시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주례행위 포함)
회 법 §114 장 선	정당(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 회 포함) · 정당선거사무소의 소 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선거 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선거 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법 §115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법 §116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 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3.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112②)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 ·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 의례적 행위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일 전 120일(2018. 2. 13.)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가 직접 주는 행위 및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제외함.
-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처 등 한정된 범위의 내빈에게 회사 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수여는 제외)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 · 자선적 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직무상의 행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법령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 4.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법 §116)
- 받거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자 : 누구든지
 - → 선거권 유무. 개인 · 법인 · 단체 등을 불문함.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 사례 예시

가. 축·부의금품 제공

❷ 할 수 있는 사례

- ☑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선거구민인 친족의 결혼식 주례 행위는 법 제113조에 위법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혼례(자녀 포함) 또는 상례에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
 -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하는 경우는 위법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전보·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 · 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 · 성명이 게재된 근조 · 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 ☑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나.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 성당 · 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재단법인인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부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
- ☑ 종친회가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종친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그 종친회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 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 법령의 근거없이 선거구안에 있는 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
- ☑ 공익재단이 재단에 재능을 기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없이 학습지도 · 예능교육 등을 하게 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습지도 · 예능교육 등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위법

☎ 할 수 없는 사례

- ☑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2만원을 넣어 헌금한 행위(서울고등법원 1996. 4. 10. 선고 96노350)
- 図 평소 동창회 총회에 3차례 5만원 내지 30만원의 찬조금을 냈고, 이전 동창회장들은 10만원 내지 50만원의 찬조금을 낸 예가 있을 뿐임에도 새로 동창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7, 12, 27, 선고 95노657)
-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기부행위금지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 교통편의 · 식사 · 다과 · 음료 등 제공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식사류 1만원 이하, 다과류 3천원 이하, 음료 1천원 이하)는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됨(이하 같음)
- ☑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 이 경우 정당에서 교통편의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물론 회의참석 당원이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그 회의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상응하는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도 교통편의 제공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 회계처리절차를 준수하여 정당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 등 제3자가 개인경비로 제공하는 경우 위법
- ☑ 의정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 · 커피 등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 다과·떡·김밥·음료(주류 제외)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 · 간판게시식 ·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 간부 · 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 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자신이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의 발제자 또는 토론자에게 음식물이나 통상의 사례금을 제공하는 행위
- ☑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 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3천원 이하 다과류를 말함)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외)·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현직 국회의원은 10명,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15명,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명을 말함(이 경우 가족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❷ 할 수 없는 사례

-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을 국회에 초청하여 국회를 관람시키고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図 정당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권역단위로 개최하는 순회경선에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인 대의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 지역현안 관련 의견 수렴 차원에서 주민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다만, 1천원 이하의 차 · 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는 제공 가능



-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구호 · 의연금품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
- ☑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

☑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 ▶ 수용보호시설 · 구호기관 ·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 ·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화환·화분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에 근조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 →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반

❷ 할 수 없는 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 화분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선거구 안에 있는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물 · 기념품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 → 이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 · 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 제공 가능
-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 · 효부 · 모범시민 · 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 · 구두미화원 · 가두신문판매원 ·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제6장 제3절·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 포함)·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 탁상일기·메모판 등의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 제외)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는 행위
 - → 이 경우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 실시행위는 무방
- ☑ 공공기관 청사 준공식에서 직·성명이 부각되지 않게 기재된 의례적인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봉사단체가 함께 경로당 청소봉사를 마치고 찍은 단체사진을 그 봉사단체에서 인화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경로당에 전달하거나 경로당이 자발적으로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경로당 내부에 게시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지역구내 파출소 준공식에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기념식수를 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행위
 - → 이 경우 표지석에 국회의원의 직·성명이 부각되지 않게 게재하는 것은 무방

☎ 할 수 없는 사례

- ▼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배부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 재산적 가치가 있는 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자필폰트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하여 기부행위 금지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

사. 상장 · 부상 수여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 이 경우 교육감선거에 있어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
- ☑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 관계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념행사에서 국회의원이 그 지위에 맞는 의례적인 범위의표창 또는 포상(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회장으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 전국 규모의 행사(행사 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의 입상자에게 상장(부상 포함)을 수여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내부행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볼 수 없음)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모범당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당부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원을 대상으로 시상할 수 없음.
-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 ·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 → 축제 · 개교기념일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하는 행위
 -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

아. 무료민원상담 등

● 할 수 있는 사례

- ☑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 ☑ 변호사·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 ·
 사무기기 · 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소와는 별개인 시민사회연구소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 준 행위(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 ☑ 대학교병원 전문인인 입후보예정자가 해당 대학교병원의 '찾아가는 순회무료진료행사'에 참여하여 무료진료를 하고 현수막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명함을 교부한 행위(부산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노521)



3.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 수령 금지

₩ 법규요약

법 §135③ · §230①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금지행위: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 그 제공의 약속 · 지시

권유 · 알선 · 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

→ 다만,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법에서 정하는 수당·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

🖫 사례 예시

- 図 자원봉사자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자장면 등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755)
- ☑ 선거사무장이 후보자의 연설원고 작성, 정책공약 개발, 사진촬영 등 업무처리 대가 명목으로 선거기획업무를 수주한 광고기획사 운영자로부터 1,250만원을 수령한 행위(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246)
- ☑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홍보원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대전지법 2015. 8. 13. 선고 2015고합184)
- ▼ 정치자금 제공자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에게 회사업무를 하지 않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만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행위(부산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노508)

4. 당내경선 관련 매수 금지

법규요약 법 §57의5, 규칙 §25의3

1. 경선선거인 등 매수금지(법 §57의5①③)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주관적요건 :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 상 대 방 :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함)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 · 비속

○ 금지행위: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지시 ·

권유 ·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규칙 §25의3) |

○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시·도지사선거는 15명, 자치구·시·군의장선거는 10명, 지방의원선거는 5명(경선후보자의 가족은 그 수에 미산입)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식사류의 음식물(1만원 이하)을 제공하는 행위

2. **경선후보자 매수금지(법** §57의5②③)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 주관적요건 : 당내경선에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

○ 상 대 방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 금지행위

-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상기 행위에 관하여 지시 · 권유 · 요구 또는 알선하는 행위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경선운동과 관계없이 청소·차량운행·경호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 경선후보자가 경선운동의 기획·전략수립·공약개발 등 경선운동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제2절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 법규요약

법 §90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7, 12, 15, ~ 2018, 6, 13,)
- 금지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 배부 행위
 -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 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 · 판매하는 행위

Tip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 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 집회나 행사의 안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당과 시·도당 당사의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 후보자의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 ☑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 설명회·토론회 강연회(선거기간 중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의 배지(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ㆍ문화ㆍ체육ㆍ예술ㆍ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 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 민속절 · 국경일 또는 사무소의 개소 · 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 · 기관 · 단체 · 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 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 지방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사회적 활동을 위하여 설립하는 포럼의 명칭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그 포럼의 명칭이 게재된 통상적인 간판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행위
 - → 다만, 수익사업을 하는 직업상의 사무소가 아닌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는 위법
-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사진 게재는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명절 · 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 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내 거리에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지지 · 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 정당이 회사를 통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당의 마크, 홈페이지 주소를 나타내는 상품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행위
- ☑ 정당이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판매한 정당의 명칭·로고·홈페이지 주소 등이 표시된 기념품(에코백, 우산, 티셔츠)을 구입한 당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착용하는 행위
- ▼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무인비행장치(일명 드론)에 자신의 기호·성명 선전문구 등이 게재된 표시물 또는 선전물을 부착하여 날리는 행위



- ☑ 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
- ☑ 선거기간 중 정당행사장 앞에서 선거구민이 '000 후보에게 묻는다. □□민중항쟁 현장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 가입, □□시위 기록을 밝혀라! 수많은 시민이 감옥가고 탄압받았을 때 000은 무엇했나?'라고 기재된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한 행위(광주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539)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법규요약

법 §93①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7, 12, 15 ~ 2018, 6, 13)
- 금지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허용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명의(그의 성명이 포함된 상호 포함)로 발행하여 제한된 범위 안의 거래처,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하는 행위
 -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위법
- ☑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 또는 생일축전을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 ☑ 정당 · 후보자의 연고자 추천서 배부 등
 -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자가 연고자 추천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전달하는 행위
 -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에 연고자 추천서를 비치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작성 · 제출하게 하거나, 당원집회,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 추천서 서식을 비치 · 배부하여 직접 또는 행사 보조요원이 대신 작성 · 제출하게 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무관하게 고문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개업초청장에 학력 및 경력이 포함된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여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 기존 의뢰인, 한정된 범위의 내빈에게 보내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의 현직 및 사진,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법무법인 사무소를 방문하는 손님, 의뢰인, 지인, 유관기관 관계자와 변호사가 영업상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 선전구호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가 성년의 날에 즈음하여 성년이 되는 지역주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단순히 성년 됨을 축하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창당대회 · 합당대회 ·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또는 당명 개정 현상공모를 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
 - →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명절인사 신문광고(사진 포함)를 하는 행위
- ☑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 1인 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입후보예정자만의 신문창간 축하광고를 하거나 그 광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의 당직자가 자신의 소속 정당 명칭과 그 직책이 게재된 명함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선거구민 등과 인사를 하는 때에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행위
 - → 다만, 자신이 직책을 맡고 있는 소속 정당·단체의 명칭 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다른 사람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 국회의원이 정책토론회 개최 시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일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정당이 컴퓨터교실, 직업훈련 강좌를 안내·홍보하기 위하여 인쇄물 또는 현수막에 정당의 명의를 표시하여 거리에서 배부·게시하는 행위
- ☑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국회의원 사무소 개소식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향후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작성하는 행위
- ▼보자 초청·대담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서명운동 홍보인쇄물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두 및 호별로 광범위하게 배부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군민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 図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457)
- 図 학교동문회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문회가 ○○○을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성명서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 ☑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학위, 경력, 홍보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발송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11. 13. 선고 2014고합33)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영상을 선거구민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수차례 상영한 행위(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611)



3.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3, 15, ~ 6, 13,)

○ 금지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 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방송 · 신문 ·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서적광고는 제외)하는 행위는 무방

및 사례 예시

❷ 할 수 있는 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가 기업체의 명의로 그 대표자를 선전하는 내용 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하는 행위
-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기독교-TV 간증을 방송하는 행위
 - →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방송출연을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 참조

☑ 서적광고

- 출판사가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없이 자사가 출판한 저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출판사가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라디오광고 및 인터넷사이트 배너광고, 키워드광고의 방법으로 통상적인 서적광고를 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전국단위의 방송광고(공익광고, 상품광고 등)에 출연하는 행위
 -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광고출연이 상시 제한됨.
- ☑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정당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가 정당의 명칭공모 또는 창당발기인대회 개최안내 등을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해당 단체의 대표자의 성명을 게재하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 ☑ 출판사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저자인 서적의 판매광고를 함에 있어 입후보 예정 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또는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에 광고하는 행위
- ☑ 출판사가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선거일 전 90일 전에 입후보 예정지역을 주된 배부권역으로 하는 신문에 광고하는 행위

-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신앙간증 · 건강강연 포스터 광고 시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행위
- ☑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 ▼ 출판사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저서에 관한 독후감 이벤트를 선거구민인 학생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행위
 - → 독후감 이벤트 광고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의 광고이므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할 수 없음.
- ▼ 저서광고가 금지된 시기에 출판사 사장이 도서를 광고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과 우호적인 문안 등이 게재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 행위(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 9, 7, 선고 2012고합243)



4. 출판기념회 개최

법규요약 법 §103⑤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3, 15 ~ 6, 13)

○ 금지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Tip

-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본
 조의 규정이 적용되나 후보자의 가족이 후보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기간에는 개최대상·장소를 불문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할수 없음.
-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게시·설치하는 현수막이나 시설물의 규격 또는 수량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후보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제한함.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서적의 표지에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하여 서적을 출간하거나 판매업자가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판매해 오던 방법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개최

- 출판사 등이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서적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유명인사 및 가수, 연예인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에서 단순히 사회나 행사 진행을 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저서 내용에 포함된 저자의 약력·소개글 또는 저서의 주요내용을 동영상으로 상영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는 행위
- →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축가를 부른 경우 그들에게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교통비, 오찬 및 다과를 제공할 수 있음.
- ☑ 현수막 · 포스터 등 게시 범위
 - 출판기념회 주최자명 · 일시 · 장소 등 통상적인 행사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개최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전 180일 전에 출판기념회 개최 ·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 또는 포스터를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 서점 등이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신간서적 안내 포스터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행위
- ☑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주최자명 · 일시 · 장소 및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 안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행위
- ☑ 초대장 이미지 파일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
- ☑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행위
 -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 ·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후보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나 평전을 제3자가 출간(출판기념회 개최 포함)하는 행위
 - → 다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선거공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서 출간은 위법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서적을 출간하거나 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저서의 내용과 무관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행위
-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는 행위
- ☑ 서적에 특정지역 개발 등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게재하여 사실상 선거홍보물화 하는 행위
- 図 공무원들이 공무용 PC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홍보 문자메시지를 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직원 등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10, 2, 선고 2014고합45)

5.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 살포 · 게시 ·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 살포

· 게시 · 첩부하는 행위

및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배부하는 행위
 -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지지호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위법

- ☑ 걷기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하는 기사가 게재된 유료 잡지 1,500부를 기념품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배부한 행위(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 ☑ 후보자에 대한 홍보·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기관지 수십부를 주택·상가 등의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광주고등법원 2008. 12. 5. 선고 2008노127)
- ☑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주간지 2면과 3면을 2만부 가량 복사하여 신문에 끼워 넣어 2만여 가구에 배부한 행위(수원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10고합117)
- ▼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임의로 구청 민원봉사과 명의의 봉투에 넣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행위(대구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527)



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 보도

岡 법규요약

법 §8의8 · §96 · §108

- 1.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금지(법 \$96)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다음의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함.

-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함.
-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 · 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 ·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 2. **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법 §108③④)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여론조사(법 §8의8⑨)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 · 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 ·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이들이 관리 ·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실시신고 내용이 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3. 투표용지 유사모형 등에 의한 여론조사 금지(법 \$108②)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4. 14. ~ 6. 1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수 없음.
- 다만,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여론조사시 준수사항(법 §108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법 제108조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 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시 준수사항(법 §1086(⑦))
- 함께 공표 · 보도해야 할 사항 :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
- 여론조사 관련자료 보관
 - 주 체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 단체
 - 대 상: 조사설계서 · 피조사자선정 · 표본추출 · 질문지작성 ·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
 - 기 간 :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 주 체 :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
 - 요 건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 보도하려는 때
 - → 이 경우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다르면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 하여야 함.
 - 기 한 : 공표 · 보도 전
 -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 보도 예정일시를 통보 받은 경우 통보 받은 예정일시 전
 - 등록대상: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
- 6.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 보도 관련 금지사항(법 \$108®)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행위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7. **여론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법 §108⑨)

-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
 - 관할 선거구선관위 :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 · 신뢰성에 대하여 정당(창당준비 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때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8. **야간 선거여론조사 제한**(법 §108⑩)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9.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 금지(법 §108⑪)

○ 주체: 누구든지

○ 금지행위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 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 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 권유 · 유도하는 행위

10.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법 §108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18. 6. 7 \sim 6. 13. 18:00)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사는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

11. 정당 · 후보자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 보도 금지(법 \$108@)

- 다음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18, 6, 13, 18:00)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 다만,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능함.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1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응답자 인센티브 제공(법 \$108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함.

13.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선거여론조사(법 \$108의2)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
- 방법: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제출
- 요청기간: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14. 여론조사 비용의 선거비용 산입(법 §120)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 ARS전화 여론조사를 법 제108조나 제254조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행위
- ✓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금지기간 중에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 법 제57조의2제2항에 규정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실시하는 행위
- ☑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참고하기 위하여 또는 당내경선의 일환으로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적합도 및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직접 또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공동명의로 실시하는 행위
 - →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외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 법 제108조를 준수하여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설문내용, 실시 횟수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나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정보로 통상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
- ☑ 여론조사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여론조사 알림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을 것이나 알림 메시지를 받은 피조사자가 본인의 의사로 야간에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행위
 - → 여론조사 참여 보상으로 여론조사기관의 명의와 비용으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사이버머니 제공 가능
- ☑ 여론조사기관이 법 제108조를 준수하면서 ARS 전화조사와 설문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통상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 특정 후보자만의 공약을 대상으로 그 지지도나 선호도 등을 조사하는 행위
- ▼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유력 후보자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 ☑ 여론조사를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통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방법 또는 내용으로 실시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하는 행위
- ☑ 설문사항에 A의 이름을 다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보다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A의 인지도를 높이고, "A는 변호사입니다. 전문직능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사항을 넣어 A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설문조사를 한 행위(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 ☑ 예비후보자가 주민 6만여 명에게 여론조사결과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하지 아니한 행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 11, 19, 선고 2010고합134)
- ☑ 후보자 경선을 불과 1~2주일 남긴 시점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A를 위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2~3차 조사의 경우 A의 경력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설문내용으로 실시한 행위(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897)
- ☑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인들로 하여금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고, 조사기관,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각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을 실시간 공표하는 행위(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고합274)
-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기사로 공표한 행위(부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합265)
 - → 2015. 1, 4.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개정됨.
 - → 2017. 2. 8.부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 図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를 팬카페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춘천)2014노233)
- ☑ ARS여론조사에서 답변문안을 찬성2개, 반대1개로 구성하여 여론조사응답을 유도하였고, '모르겠다'를 무응답으로 '보통 정도'를 긍정적 답변으로 평가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보도한 행위(광주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391)
- ▼ 착신 전환 후 걸려온 여론조사에 연령대 · 성별을 바꿔가면서 허위로 중복 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와 정당의 공정한 경선관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행위(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571)
- 図 응답이 완료된 표본만을 유효한 표본수로 산정하여야 하나, 중도이탈 응답자를 포함하고, 남녀 인구비율 가중치 부여시 국가 인구 통계에 의한 성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일괄처리방식이 아닌 순차적 보정으로 임의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실제보다 지지율 격차를 줄여 발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6도8451)





7. 호별방문 및 서명·날인운동

岡 법규요약

법 §106

1. 호별방문의 제한(법 §106)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상시 금지)
-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Tip

-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음.
- 호별방문죄는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함.
- 선거법 제106조의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를 포함함. 다만,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2. 서명 · 날인운동의 금지(법 §107)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 사례 예시

가. 호별방문의 제한

● 할 수 있는 사례

-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전철역 지하상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당원협의회의 대표자나 소속 당직자, 입당을 추천한 소속 당원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규 당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당원증과 의례적인 내용의 입당축하편지를 당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 図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연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인터폰 상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행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 8, 30, 선고 2002고합308)
- ▼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 내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아파트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아파트관리인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 11. 9. 선고 2010고합35)
- ▼ 후보자의 아들과 자원봉사자가 선거구 내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7. 5. 선고 2012고합86)
- 図 예비후보자가 군청, 경찰서 등의 다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각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명함 교부 및 지지호소를 한 행위(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5. 19. 선고 2014고합29)
- 図 예비후보자가 학교 및 관공서 사무실, ◇◇지방법원 □□지원장 부속실과 ◇◇지방검찰청 □□지청장 부속실 등 다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나. 서명 · 날인운동의 금지

● 할 수 있는 사례

- ☑ 국회의원이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학등록금 결제관행의 개선방안을 찾고 앞으로 정부가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 → 다만, 서명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 ·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 됨.
- ☑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의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해당 지역의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명운동 안내문구가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정당의 명칭・로고가 게재된 복장 또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주민의 서명을 받는 행위
 - → 다만, 서명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 됨.

-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연판 등 서명 · 날인을 받거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
- 図 노조위원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 갑(甲)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명부 양식을 비치하고 생산부 소속 직원 19명에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여 서명을 받은 행위(전주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10고합68)

8. 의정활동보고

법규요약 법 §111

○ 주 체: 국회의원, 지방의원

○ 금지기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3, 15, ~ 6, 13,)

- 금지행위: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 보고서(인쇄물, 녹음 · 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송 ·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 · 인사말 (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 일정 고지, 그 밖의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자동동보통신의 방법 포함)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함.
 - → 의정보고서의 발행부수 · 면수 · 규격 또는 제작비용에 관하여 선거법상 제한규정은 없음.

🖳 사례 예시

가. 보고주체

◉ 할 수 있는 사례

- ☑ 나레이터(Narrator)가 단순히 의정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의 의정보고 녹화영상물을 제작 · 배부하는 행위
 - → 다만, 나레이터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거나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의원이 의정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는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의정보고회장을 떠나는 행위
- ☑ 자원봉사자 등이 공개된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 장소에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의원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의정보고 녹화물을 상영하는 행위
- ☑ 정당이 기관지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나. 보고대상

❷ 할 수 있는 사례

- ☑ 비례대표의원이 해당 선거구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 선거구가 중첩되는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서로에 대한 언급 없이 면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의정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선거구가 중첩되는 지역에 배부하거나, 선거구가 중첩된 지역에서 서로 지지 · 선전 없이 공동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역이 포함된 새로운 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 ☑ 의원이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지역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 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다. 보고기간

◎ 할 수 있는 사례

☑ 카카오톡 · 모바일메신저 · 트위터 ·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상시 전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도록 발송하는 행위
- ☑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에 그 지역주민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행위
- 図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의정보고서를 보여주고 의원으로서의 활동실적을 설명한행위(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469)

라. 보고장소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주최자의 허락 하에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집회·모임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가정집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 다만, 일반 가정집에서 개최하는 경우 의정보고회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참석을 원하는 선거구민의 출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 의원이 거리·시장에 행사용 천막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의정보고에 관심이 있어 행사용 천막에 들어온 지역주민에게 의정보고에 대한 응답을 하는 행위

- ☑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일반 선거구민이 의정보고회 개최상황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등 옥외에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마. 작성 · 보고방법

● 할 수 있는 사례

- ☑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 연수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여 제작한 책자 형태의 유인물을 의정보고서로 발송하는 행위
- ☑ 이 · 미용실, 식당 등에 의정보고서를 비치하여 두고 선거구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를 보거나 가져가도록 하는 행위
- ☑ 의정보고회장에서 배부, 우편배달, 호별 투입, 우편함 투입, 신문삽입 배포, 가두 배포, 현관문에 부착, 공공기관·마을회관·종교시설 등에 비치하는 행위
- ☑ 의정보고회 시 참석자 중 내빈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소개시키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당직자 등을 의례적으로 인사시키는 행위
- ☑ 의정보고회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는 행위
- ☑ 의원사무소를 방문한 자에게 단순히 의정활동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 → 의정활동 영상의 상영장소와 시간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등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는 경우 당해 의원이 참석하여야 함.
- ☑ 인터넷 팩스발송 대행사이트와 같은 용역대행사에 의뢰하는 등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의정보고서를 전송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의 일환으로 선거구민에게 지역사무소 개소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의정보고서를 통상의 명함 크기로 작성하여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 명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경우는 위법

- ☑ 의정보고서를 벽보나 현수막 형태로 작성 · 게시하는 행위
- ☑ 의정보고서를 도로변 · 점포 · 골목길 등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 종합유선방송사가 의정보고회 전체내용을 녹화 방영하는 행위

☑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영상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는 행위

바. 보고내용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의정보고서의 서두 또는 말미 등에 의례적인 신년인사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 지명유래 · 고사성어 등을 의정보고서 지면 중 일부에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 ☑ 의정보고서에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도된 신문 칼럼을 그대로 게재하는 행위
- ☑ 의정보고회장에서 동료의원 · 후원회장이 단순히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 · 격려사를 하는 행위
 - →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지 · 선전하는 내용이 부가되는 등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위법

- ☑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특정 정당의 정책홍보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 재임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을 자신의 의정활동사항으로 보고하는 행위
- ☑ 의정보고서에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한 행위
- 図 임기가 만료될 무렵 의정보고서에 다음 임기에 다루어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배부한 행위(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4490)



사. 의정활동보고 고지 등

● 할 수 있는 사례

- ☑ 의정보고서 배부봉투에 보고자의 소속정당명 · 성명 ·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 → 소속 정당의 선전구호나 선거구호 등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 ☑ 보고자의 사진이 포함된 의정보고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 신문배달 소년 등 인력을 이용해 의정보고서를 호별 투입하는 경우 역무제공의 대가로 통상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행위
- ☑ 의정보고회 장소에 입당원서와 후원회 가입신청서를 비치하여 가입하려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입당원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해당 시·도당 또는 후원회에 전달하는 행위

- ▼ 보고장소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기 위한 공약성 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 ☑ 의정보고회장에서 춤·풍물·퍼포먼스 등의 문화행사를 하거나,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의정보고회 참석자에게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
- ☑ 의정보고서 내용이 저장된 USB를 제공하는 행위

9. 정책 ·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 법 제82조의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이 표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함)는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 표에서 같음)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정당 · 후보자의 정책 ·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의 금지사항
 - 특정 정당 · 후보자에게 유리 ·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 운영하는 행위
 - 정당 · 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 언론기관등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 ·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고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함.
 - →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정당·후보자를 함께 공표하여야 함.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정책 ·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결과를 기관지 · 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 · 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해당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보도자료 제공 ·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행위
- ☑ 후보자간 공약의 장단점을 서술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그 우열을 가릴 수 있도록 표현하는 행위
 - → 예) 종합생활기록부와 같이 공약의 장단점을 서술하여 나타내는 행위



- 図 공약검증평가위원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그 공약평가 결과를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
- 図 평가결과를 수치화·등급화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선입관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
 - → 예) 평어(수우미양가, ABCDF, 매우 좋음·좋음·보통·미흡·나쁨·매우 나쁨 등) 또는 석차·백분율 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비교평가 하는 행위



제3절 선거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1. 각종 집회

岡 법규요약

법 §103

- 제한기간: 선거기간 중(2018, 5, 31, ~ 6, 13,)
- 제한행위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 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누구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 사례 예시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기간 중 새마을운동협의회가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회의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행위
-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선거기간 중에 기념일과 관련이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기념식을 거행하는 행위
- ☑ 선거기간 중이라도 국가기관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 다만,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법 제9조·제86조·제103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총기탈취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 몽타주 배부 및 주민신고요령 등 홍보를 위하여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선거기간 중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및 연탄(쌀)나누기 행사나시 · 군 새마을 수련회를 개최하는 행위
- ▼ 한국자유총연맹이 선거기간 중 전국 자유 수호 웅변대회 예선 및 본선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례행사인 회원단합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 정당의 사무처 유급당직자들이 선거기간 중 선거구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 ☑ 택지개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기간 중 "현시가 보상대회"를 개최하여 집회 참가자 70여명과 같이 후보자인 현 시장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한 행위(수원지방법원 2002. 11. 22. 선고 2002고합741)

2.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등

법규요약 법 §244

- 1. 선관위 위원 · 직원 등에 대한 폭행 · 협박 행위 등 금지(법 \$244①)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선관위 위원 · 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 협박 · 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 · 감금하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 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재외선거 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 포함)를 소요 · 교란하는 행위
 - 투표용지 · 투표지 · 투표보조용구 · 전산조직 등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 포함)를 은닉 · 손괴 · 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 2. 당내경선에서의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등 금지(법 §244②)
- 주 체: 누구든지
- 적용요건 : 법 제57조의4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당내경선을 위탁한 경우
- 금지행위: 위 '1. 금지행위'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

🖳 사례 예시

爻 할 수 없는 사례

☑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받아 가슴에 달고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 개표대 위에 있던 투표용지 중 수십 매를 집어 던지고 다른 투표용지 2매는 입에 넣어 씹고 또 다른 2매는 손으로 찢으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개표소를 교란한 행위(창원지방법원 1995, 8, 10, 선고 95고합220)



- ☑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단속업무를 수행 중이던 선관위 지도계장을 폭행한 행위(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8294)
- ☑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선관위 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관위 지도계장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서울고등법원 2008. 9. 19. 선고 2008노1473)
- ☑ 선관위 사무실에서 조사받은 문답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문답서를 찢어 선관위 직원의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훼손한 행위(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859)
- ▼ 자신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여 달라고 하여 교부 받은 후 이를 찢어버려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확인서 1부를 훼손한 행위(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 12. 4. 선고 2009고합42)
-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도로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을 상대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찍은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으로부터 명함교부 권한이 있는지 문의받자 공정선거지원단이 들고 있던 캠코더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아 탈취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노431)
- 図 선거사무원의 표찰을 잡아 뜯고 팔과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한행위(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4고합177)
- ▼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행위(대전고등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388)

3.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법규요약 법 §250 · §251

- 1. **허위사실공표 금지**(법 §250)
-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1항)
- 주 체: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 : 직업 · 경력등 · 재산 · 행위 ·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2항)

- 주 체: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다.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제3항)

- 주 체: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행위를 하거나 위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하는 행위

Tip

-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함.
-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또한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음.

2. **후보자비방 금지**(법 §251)

○ 주 체: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3. 특정 지역 등 비하 · 모욕 금지(법 §110②)

○ 주 체: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 금지행위: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장소에서 연설 중 후보자의 비정규학력이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공표하는 행위

- ▶ 비정규학력을 공개장소 연설 · 대담용 녹화기를 이용하여 방영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 근로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그 세금이 종합소득세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행위(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39)
- ▼ 후보자 명함 및 선거공보의 '경력' 또는 '약력'란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행위(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 ☑ 선거공보 제출 당시 최근 5년간 세금체납액은 금 44,231,000원이고 직계존속의 세금체납액은 금 1,271,000원임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체납액누계'란을 공란으로 작성한 행위(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2713)
- ☑ A의원이 '한·미 FTA'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의원이 한·미 FTA에 대하여 찬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연설·대담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423)
- ☑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는 후보자가 선거공보 2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후보자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게재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11. 2, 18, 선고 2010노3676)
- ☑ 거리연설을 하면서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1도1078)
- ▼ 후보자 명함에 '○○시펜싱협회 발기인 회장'으로서 ○○시펜싱협회 결성을 추진하다가 중단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시펜싱협회 회장(전)'라고



- 기재함은 물론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로 표기한 행위(대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도15530)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학생회장(전)'이라고 기재한 행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350)
- ☑ 2014. 5. 13 특정 정당을 탈당하였으나, 2014. 5. 7 ~ 5. 9까지 선거구민 거주자들의 우편함에 후보자의 이름 및 '무소속'이 기재된 명함을 투입한 행위(대법원 2015, 3, 27, 선고 2015도2426)
- ▼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이라고 기재한 행위(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2429)
- ☑ 고등학교졸업학력고사시험에 합격한 후보자가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의 학력란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이라고만 기재한 행위(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207)
- ☑ 후보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발언한 행위(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 ☑ 선거사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전과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전과없음'이라는 허위사실이 선거공보에 기재된 것을 알고도 공표한 행위(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8759)
- ☑ '○○재단의 경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인 자가 현수막·명함 등에 '○○재단 운영위원'이라고 기재한 행위(부산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노267)
- 区 '○○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생회 부회장, □□대학 무역대학원 원우회장'이라는 정규학력 외 학력을 '경력란'에 기재한 명함을 배포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2016노3474)
- ▼ 청와대 정식비서관으로 9개월 정도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임시비서관에 불과하였던 것처럼 페이스북 및 네이버밴드에 게재한 행위(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354)

| 당선 및 낙선 사례 |

岡 법규요약

법 §118

○ 주 체: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

○ 대 상:선거구민

- 금지행위: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위하여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 · 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 다만, 법 제79조제3항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는 무방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무방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가 정당 · 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의례적인 감사인사를 하는 행위
- ☑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의 대표자, 국회의원도 가능함.



- ☑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인사장을 선거구민(매세대)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 후보자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에 규정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의례적인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 ☑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어깨띠 및 소품을 착용한 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녹음기·녹화기 포함)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 ☑ 일반 선거구민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당선 또는 낙선사례 현수막을 선거일 후 13일을 지나서 계속하여 게시하는 행위
- ☑ 「공직선거법」제118조제5호에 따라 읍 · 면 · 동마다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1매를 초과하여 게시하는 행위

제4절 공무원 등 불법선거관여행위 금지사례

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 법규요약

법 §9

○ 주 체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전에 당한 · 당규에 따라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소속 정당의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 제9조에 위반

- ☑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
-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포함된 전직 시·도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선거중립의무 위반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내용·횟수·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그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함.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1.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법 §85①)
- 주 체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85②)
- 주 체 : 공무원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 간주규정 : 공무원이 소속직원, 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85③ · ④)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교육적 ·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 ·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①)

가 주 체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원 제외)
 - ※ 교육감선거의 경우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무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 · 리 · 반의 장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임·직원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나. 금지행위

상시 금지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2018. 5. 31 ~ 6. 13.) 중 금지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3.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법 \$57의6)
- 주 체:공무원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및 사례 예시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또는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 다만,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법
- ✓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에 즈음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거나, 시·구정에 협조해 준 유관단체장 및 통·리·반장에게 의례적인 내용(업적·치적 제외)의 퇴임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퇴임과 관련하여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 교사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재학생 2명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남편이 출마하니 뽑아달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라"고 통화한 행위(대전지방법원 2004. 10. 20. 선고 2004고합312)
- ▼ 공무원들이 인터뷰 · 토론회 자료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신문 기사에 프로필이 게재되게 한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008)
- 図 공무원들이 후보자에게 자신들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민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광주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4노684)
- 図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13)
- ☑ 입후보한 학교 이사장의 당선을 위하여 학교 교장이 교무부장 등 10명과 월례회의를 하던 중 "어디 가서 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사장님이 한 표라도 의식하고 계시니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발언한 행위(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06. 8. 23. 선고 2006고합43)
- ☑ 공무원들이 현직 도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대담·토론자료를 작성하거나 대담·토론회의 예행연습을 한 행위(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 ※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출마의 변·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에 관여하고, 선거홍보 대책회의 참여,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제작에 참여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5노730)
- ☑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대전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5노149)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 법규요약

법 §86②

-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4. 14. ~ 6. 13.)
- 금지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제외)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무방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제외)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
 - → 또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법한 경선운동시에는 금지되지 아니함.
 - 통 · 리 · 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방

• 지방자치단체장 · 교육감(소속 공무원 포함)이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허용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 ·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 · 후원 행위
- 특정일 ·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 ·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 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 교양강좌 개최 · 후원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 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 또는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 집단민원 또는 긴급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 · 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 · 면 · 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 · 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 · 시설 · 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 → 다만, 의례적 방문만이 허용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는 위법
-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직업인을 민원 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 상담을 하는 행위
 -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
- ☑ 「지방재정법」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범주 안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에 정부가 도로의 준공 및 개통일정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도로개통식을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단합대회에 당원으로서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 「아동복지법」 및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의 운영,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조례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 ☑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훼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장이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직접 민원을 접수 · 상담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전에 직무상 행위로서 자신에 대한 선전이나 업적홍보 없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
-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 · 설명회 · 불우이웃돕기 · 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4.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 · 금지

🎮 법규요약

법 §86567

- 1.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 · 배부 제한(법 §86⑤)
-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소속 공무원 포함)
- 금지행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7, 12, 15, ~2018, 6, 13,) 지방자치단체(교육감선거의 경우 교육청을 말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위의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배부 가능

○ 허용행위

-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행위



- **기타 허용행위**(규칙 §47④)
-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 각종 통계 ·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 · 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 교양강좌 · 공청회 · 체육대회 · 기념일 · 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 단체장의 성명 · 사진 · 활동상황 · 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이하 이 표에서 같음)
- 환경 · 의료 · 교통 · 조세 · 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 재난관리 ·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업소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청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해당됨.

2. **사적 행사 등 참석 제한 등**(법 §86⑥)

- 주 체: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 금지기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7, 12, 15, ~2018, 6, 13,)
- 금지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행위
 -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이 금지됨.

- 허용행위(교육감선거 제외)
 -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이 가능한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3. **광고출연 금지**(법 §86⑦)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의 지위에 있는 경우 직·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초대의 글을 게재하여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발송하는 행위 및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에 축사·대회사 등을 게재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의 일부지면에 의회소식란을 설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원(직·성명, 사진, 지역구 등 표시)의 대 집행부 질의 등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행위
 - → 다만, 지방의회 내에서의 활동이 아닌 선거구의 활동내용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위반
- ☑ 법 제86조제6항 제한기간 중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전국체전 백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간사(직명·성명·사진 포함)를 게재하여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 전 시·도, 유관기관. 학교 등에 배부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하는 홍보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이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게재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게재한 서한문을 발송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의 SNS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 동영상을 게시 · 전송하는 행위
 - → 다만,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됨.
-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의례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인단 모집홍보 동영상에 출연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정당의 SNS등에 게시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인단 모집 홍보동영상 출연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에는 위반

-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녹화물을 제작하여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장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핵심 국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에 출연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각·외출·조퇴를 신청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제5절 단체의 선거운동 및 활동사례

1. 단체의 선거운동

법규요약 법 §10 · §58 · §87

-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법 §87)
- 단체는 선거법에서 제한 ·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 다만, 법 제59조에 따른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 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표에서 '후보자등'이라 함)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 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 · 단체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대표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이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개인 자격의 선거운동은 가능함.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 ·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정당 · 후보자를 함께 공표하여야 함.

2.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법 §10)

- 사회단체 등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음.
- 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후보자의 가족(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선거벽보·선거공보에 지지· 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 연설·대담 지원연설, 전화·전자우편·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단체들의 공동기구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 → 통상적인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범위를 넘어 일반 선거구민을 선거인단 또는 국민배심원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하거나, 단체 간 공동기구를 새로이 결성하여 지지하기로 결정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위법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회원용 소식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단순히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행위
 - → 다만, 그 결정내용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위법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연합하여 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법에서 제한 ·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추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지지후보를 결정한 후 자체 홈페이지에 지지 후보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팝업(POP-UP)을 게시하여 이를 클릭하면 지지후보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행위
- ☑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후보자의 이력과 정책공약 홍보, 지지·선전 등일체의 행위 없이 단순히 투표를 통해 지지할 후보자를 정하는 행위
- ☑ 노동조합 사무실을 통상의 임차료를 받고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 ☑ 특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 ·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표하는 행위
 - →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자가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위법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연합단체가 결의기구에서 지지·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그 명의로 산하조직 또는 소속 조합원들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알리는 행위(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 →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공기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반

- ☑ 단체가 일반 선거구민을 후보단일화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표시물·광고물 등을 거리나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차량에 게시하거나 단체회원 등의 옷에 새겨 이를 착용하는 행위
- ☑ 단체가 낙천·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 등을 제작하여 거리집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서명운동을 하며, 낙천·낙선운동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부착하는 행위
- ☑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는 내용이나 지지 · 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 ☑ 노동조합 사무실에 기존부터 설치되어 있는 전화 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별도로 전화를 증설하여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신문 · 방송광고 등을 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업장 내 또는 외벽에 게시한 행위(부산고등법원 2004, 11, 17, 선고 2004노787)
- ▼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한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7)

☑ 단체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각종 행사 등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행위(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2.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Ⅲ 법규요약

법 §87 · §89

1. **사조직 설치 금지**(법 §87②)

주 체 : 누구든지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이 표에서 같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2.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법 §89①)

○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법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 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예 외: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는 예외로 함.

Tip

유사기관이라 함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른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말하며, 그 선거운동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및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의 연구소 등 개설행위
- ☑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사무실 개설행위
 -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간판 등을 설치하는 외에는 선거준비를 위한 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 각종 단체 등이 선거와 관련 없이 당초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라 하더라도 각종 선전물에 후보(예정)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행위는 할 수 없음.
-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집에서 자원봉사자가 전화홍보를 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
- ✓ 선거운동기간 중 단체의 회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그 사무소에 설치된 전화·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다만, 단체의 사무소에 별도의 전화·컴퓨터 등을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
- ☑ 정당 소속 및 무소속후보자의 단일화모임 구성 등
 -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의 제3자가 참여하는 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
 - → 다만,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위법
 - 정당 소속 및 무소속후보자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한 후 순수하게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모의 별도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 단일화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산악회의 회원이 순수하게 등산 목적의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행위
 - → 다만,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법
- ☑ 정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를 선거기간 전에 설치·운영하는 행위

- ☑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지지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 ▼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 선전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약속 · 권유하기 위하여 위촉장 ·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
- ☑ 단체 등이 그 구성원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견이나 업적을 교육시키거나 홍보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에 동원하는 행위
- 図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참여하거나, 기존의 단체·조직을 그 선거대책기구의 산하기구로 구성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 → 다만,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소속 당원 외에 다수의 비당원이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함.
- 図 정당이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을 유세지원단 · 구전홍보단 등으로 조직화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등 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된 당사를 벗어나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 ☑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선거운동 연습장소 등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대전지방법원 1996, 8, 8, 선고 96고합26)
- 비록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있다고 할지라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공간을 벗어나 별도로 구획된 시설에 추가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노344)
- ☑ 아르바이트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선거사무소가 아닌 장소에 상근시키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홍보전화를 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8747)
- 図 연구소를 설립한 후 300여 명의 후원조직을 만들고, 인지도와 지지도 확대를 위한 선거 관련 회의 개최, 입당원서 전달, 각종 단체 행사 일정 파악, 후보자가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도록 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10고합91)



3.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

법 \$87 · §103③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인 모임(후보자의 팬클럽 포함)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 사례 예시

가. 조직 결성 · 운영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나 학술·취미 활동 등을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 ☑ 팬클럽이 통상의 활동 · 운영을 위한 내부조직을 두는 행위
-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한 내부활동을 위하여 연대조직을 결성하는 행위
- ☑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정치인팬클럽 명의의 기부행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며, 팬클럽의 경비 또는 팬클럽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2조 또는 제31조에 위반됨.

☑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를 지원하거나 당한 · 당규에서 정한 경선운동을 하기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가·나·다에서 같음)를 위하여 팬클럽·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 팬클럽이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설치하거나 그 팬클럽 운영경비를 회원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모금하는 행위
-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팬클럽 내부에 경선대책본부 등 경선운동기구를 설치하는 행위

나. 온라인(ON-LINE) 활동

❷ 할 수 있는 사례

- ☑ 팬클럽 회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팬클럽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게재하는 행위 제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 팬클럽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 · 동정 등을 게시하는 행위
-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여 후보자의 근황
 등 활동상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비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 ☑ 정치인 팬클럽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홈페이지의 명칭 · 주소 및 소개 등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형태의 검색광고를 이용하여 자신의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행위
 - →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법 제82조의7에 따라 자신의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검색광고를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위반됨.



- ☑ 인터넷상에서만 모임의 틀을 갖추어 활동하는 팬클럽이 개설한 단톡방(ex. 카카오톡)에 선거후보자의 캠프 관계자를 초대하여 후보자에 대한 홍보 부탁 및 홍보자료를 올리게 하는 행위
 - → 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공표나 비방 등에 이르지 아니하여야 하며, 팬클럽의 활동이 사조직의 설치 및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 위반

- ☑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정치인팬클럽의 홈페이지에 팬클럽의 명의 또는 팬클럽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NS 포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 · 전송하는 행위

다. 오프라인(OFF-LINE) 활동

● 할 수 있는 사례

-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하는 내용 없이 팬클럽 회원이 피켓·인쇄물을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 다만, 호별방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는 위법
- ☑ 팬클럽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등산을 하는 경우 함께 등산을 하며 담소를 나누는 행위
-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목적에 맞게 친목도모·학술·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게 하는 행위
- ☑ 팬클럽의 임원 등이 후보자의 이름이 표기된 팬클럽의 명칭을 게재한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 다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살포(특정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하는 등 통상적인 수교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위법
- ☑ 기존 팬클럽 회원이 소개한 지인을 대상으로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을 권유한 후 입회한 회원에게 단체장 출마요청 서명을 받는 행위

☑ 팬클럽사무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팬클럽 회원을 모집한 후 입회한 회원에게 단체장 출마요청 서명을 받는 행위

- ☑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 집회 또는 선거지원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는 행위
- ▼ 특정 후보자의 당선 · 낙선운동을 하는 팬클럽의 회원들에게 팬클럽이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 ☑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선전구호 등을 연호하거나 행진하는 행위
- ☑ 팬클럽이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외에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팬클럽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가두에서 현수막을 가판에 걸고 어깨띠를 두른 뒤 팬클럽 회원을 모집한 후 현장에서 입회한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장 출마요청 서명을 받는 행위



제6절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사례

1.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원협의회

법 등61의2 · §112② · 정당법 §37③

-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61의2)
- 주 체: 중앙당, 시·도당
- 설치단위: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 설치기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2018. 2. 13. ~ 7. 13.)
 - →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관위에 서면신고
- 당원 중에서 정당선거사무소장 1명을 두어야 하며,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
- 간판 · 현판 · 현수막의 설치수량 및 규격제한은 없으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성명 · 사진이나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 및 반대하는 내용 게재 금지
- 2. 정당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법 §112②)
- 정당의 간부·당원, 선거사무관계자, 가족·친지·지인 등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 초청 가능
 - → 정당선거사무소 외 별도 장소에서 개소식 개최 금지
- 정당선거사무소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정당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1명당 3천원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 제공 가능

3.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 설치 금지(정당법 \$37③)

○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설치 불가

Tip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설치에 이르렀는지는 문제된 장소의 주된 용도 및 기능, 당원협의회 등 시·도당 하부조직과 관련된 명칭·표지사용 여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인력의 상주 또는 수시 근무 여부 및 그 연락을 위한 사무공간 유무, 그 장소적 설비에서 이루어진 당원활동을 비롯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에 두는 소장·회계책임자에게 통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 → 회계책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
- ☑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시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명의로 당원집회 개최신고를 하는 행위
- ☑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 "기호 ○번 ◇◇◇당,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정당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성명·사진·당선기원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
- 図 정당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정당활동

○ 주 체: 중앙당, 시·도당

시 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18, 5, 30,)까지

○ 허용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따른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호별방문 제외)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주요 정책 홍보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정당의 명의로 국회의원 사무실(건물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면서 부수적으로 정당의 정책강연회 개최를 고지하는 행위
-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자당의 정책인 '광역 전철 조기 확정'을 홍보·축하하는 현수막을 정당의 당사나 국회의원사무실 외벽에 게시하거나 당원협의회가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지역 현안 성사 축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책홍보차량(현수막, 확성장치, LED, VTR 등 설치 차량)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집회 형태로 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 정당이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정부기관의 관계자가 토론회 참석자에게 단순히 해당 기관의 업무를 설명하거나 안내책자를 비치하는 행위
 - → 다만, 취업상담 · 알선 등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이르는 행위는 금지
-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당원협의회장 또는 국회의원의 직 · 성명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행위
 - → 다만, 국회의원이 행한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는 행위는 금지
- ☑ 정당이 청소년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명예당원(「정당법」상 당원이 아니며, 「당한・당규」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 당의 가치와 노선에 동의하여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을 위한 청소년위원회를 두는 행위
 - → 다만,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
- ☑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 혁신위원회', '당 윤리위원회', '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에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확성장치 등 홍보시설물(정책홍보차량)을 이용하여 정책홍보 연설을 하는 행위
- 図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당직자가 자신의 명함에 자신이 직책을 맡고 있는 소속 정당 · 단체의 명칭외에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 후보자가 되려는 다른 사람의 직 · 성명을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3. 창당대회 등 개최 제한

법규요약 법 §140

제한기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2, 13, ~ 6, 13.)

○ 제한대상: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 제한내용

• 개최장소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

• 참석대상 : 소속 당원(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 포함)

→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이 아닌 제한된 인원의 내빈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

○ 창당대회 등의 고지

• 신문공고: 「정당법」제10조제2항의 신문공고

- 표지게시
 - 창당대회 등 장소에 5매 이내,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 창당대회 행사장의 입구나 외벽 · 옥상 · 담장 등에 게시 가능
 - 표지는 규격 제한이 없으며,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주최자가 철거
 -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또는 선전구호 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주최당부 명의로 초청장 발송 가능
-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는 제공할 수 있으나, 이외에 일체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은 제공할 수 없음.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창당대회 등을 알리는 고지벽보를 선거일 전 120일 전에 거리 등에 첩부하거나, 고지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행위
 - → 고지벽보와 현수막은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함.
- ☑ 당원집회 금지기간 중 선거법 제140조의 제한규정을 준수하여 후보자선출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창당대회 등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주최당부 명의로 당원이 아닌 내빈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일 전 120일부터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초청장, 표지 등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선전구호 등 선전내용을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 행사장 밖에 확성장치, 멀티비전 등을 설치하여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상황을 일반 선거구민이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 행사참석의 대가로 참석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図 창당대회에 당원만이 참석하였더라도 창당대회 초청장 1,119장을 당원이 아닌 동창생과 '000군민회' 회원등에게 발송한 후 창당대회를 개최한 행위(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4. 당원집회 개최 제한 · 금지

법규요약 법 §141①②④⑥

- 1. 당원집회 개최 제한(법 §141②④⑥)
- 주 체:중앙당,시·도당
- 제한기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2018, 3, 15, ~ 5, 13,)
 -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5, 14, ~ 6, 13,)에는 개최 불가
- 개최신고: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

■ 신고대상의 예외

-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 신고시기: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 개최장소 :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 · 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 표지게시: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1매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 상기 '신고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당원집회 개최장소에 표지게시 생략 가능

○ 유의사항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나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표지는 당해 당원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함.

2. **당원집회 개최 금지**(법 §141①)

- 주 체: 중앙당. 시·도당. 당원협의회
- 금지기간: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5, 14, ~ 6, 13,)
- 금지행위: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 또는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일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금지되는 당원 집회에 해당하지 않음.

🔯 사례 예시

가, 당원집회 개최 제한

● 할 수 있는 사례

- ☑ 단체수련시설을 임차하여 당원들의 집단연수를 실시하는 행위
- ☑ 당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당로고 포함)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 정당이 당원교육용 교재를 녹음·녹화테이프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참석당원에게 배부하는 행위
- ☑ 소속 당원만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텔레비전 채널(하나TV 등)을 이용하여 당원교육용 영상물을 송출 · 방송하는 행위
- ☑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이 행사에 필요한 막대풍선·손수건·손깃발 등을 사용하는 행위
- ☑ 당원집회의 질서유지·청소 등을 위하여 단순히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한 조끼 또는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
- ☑ 정당 소속의 봉사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그 명의로 일반봉사단원·지역 문화예술인·지역정당인 등과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그 발대식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봉사단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그 발대식 장소에 대통령의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봉사활동 과정에서 기부행위 등 선거법상의 각종 제한 ·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할 수 없는 사례

- ☑ 당원단합대회에 일반 선거구민과 관할기관장을 참석하게 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다리 밑에서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 ☑ 행사장소에 게시한 표지 외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표시한 안내·홍보용 현수막·깃발 기타 시설물을 외부에 게시하는 행위
- ☑ 당원집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대가 기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현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교통비 포함) 제공은 무방함.
- ▶ 가수 · 성악가 · 공연단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예공연을 하는 행위
- ☑ 당원이 아닌 자에게 당원집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 당원연수교육을 빙자하여 실제로 연수나 교육은 시키지 아니하고 오로지 관광을 시키고 식사 및 교통편의 등만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811)

나. 당원집회 개최 금지

❷ 할 수 있는 사례

- ☑ 당원집회 금지기간이라도 정당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 로고송과 유니폼을 공모한 후, 응모자 등 제한된 범위 안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부 평가회를 개최하는 행위
- ☑ 당원집회 금지기간 중에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정당이 당원집회 개최금지기간 중에 자연보호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반당원을 모이게 하는 행위
-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선출대회와 별도로 소속 당원들을 모이게 하여 후보자로 선출된 자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이나 공천자 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5.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제한 · 금지

법규요약 법 §138 · §138조의2 · §139 · §144 · §145

- 1. 정강 · 정책홍보물의 배부 제한(법 §138)
- 주 체:정당의 중앙당
- 제한기간: 선거기간 중(2018, 5, 31, ~ 6, 13.)
- 제한내용
 - 종 류: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
 - 규격 및 면수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8면 이내
 - 배부수량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 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 게재내용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경력·학력·학위·상벌 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 · 주소 ·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배부 전까지 중앙선관위(정당과)에 2부(전자적 파일 가능)를 제출하여야 함.
- 2. **정책공약집의 배부 제한**(법 \$138의2)
- 주 체: 정당(중앙당 또는 시·도당)
- 시 기: 언제든지
- 발간횟수: 제한 없음



○ 게재내용 등

- 정책공약집은 도서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
- 자당의 정책과 선거공약
 - →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정책공약집 앞면에 "정책공약집"이라 표시하고, 정당명은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 정책공약집의 뒷면에는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제1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3자가 정책공약집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됨.
-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장소(선거연락소에서 이루어지는 연설·대담 장소 포함)에서의 판매
 -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정책공약집 제출

• 시 기 : 발간 즉시

• 제 출 처 : 발간 주체(중앙당 또는 시 · 도당)에 따라 중앙위원회(정당과) 또는 시 · 도위원회

• 수 량 : 2권(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3. **정당기관지의 발행 · 배부 제한**(법 §139)

○ 주 체:정당의 중앙당

제한기간: 선거기간 중(2018, 5, 31, ~ 6, 13,)

○ 발행횟수

• 통상적인 주기에 의하되. 발행횟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

- 증보·호외·임시판도 발행횟수에 포함하며, 배부지역에 따라 게재내용 중 일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봄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 · 성명 · 사진, 경력 · 학력 · 학위 · 상벌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 정당의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첩부·게시·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 발행 즉시 중앙선관위(정당과)에 2부(전자적 파일 가능)를 제출하여야 함.
- 4. 당원모집 등 금지 · 제한(법 §144)
- 금지기간 : 선거기간 중(2018, 5, 31, ~ 6, 13,)
- 금지행위: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 시·도당의 창당·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는 무방
 -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회의원 또는 당협협의회장이 당원모집 내용의 문구를 게재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인사시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교부하는 것은 위반
- 5. 당사 등 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법 §145)
- 선전물 종류 : 간판 · 현판 · 현수막
- 제한기간: 선거기간 중(2018, 5, 31, ~ 6, 13,)
- 설치수량 : 제한 없음
- 설치·게시장소: 정당(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제외) 당사의 외벽 또는 옥상
 - →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 게시할 수 없음.
 - →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현수막설치가능



- 게재내용: 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의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 성명·사진·경력등(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게재 금지)
 - →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는 상시 허용(규칙 제47조의2제1호)
- 설치방법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 · 게시 금지

🔯 사례 예시

가. 정강 · 정책홍보물의 배부 제한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중앙당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정강·정책홍보물의 일부 지면(1~2면 정도)을 할애하여 게재내용을 달리하여 작성하는 행위
-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의 활동사진이나 성명을 게재하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 당원집회 교재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나.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제한

❷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정당기관지 구입을 요청하는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 정당기관지에 특정 업체 또는 개인의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그들로부터 통상적인 범위의 광고료를 받는 행위
-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만이 게재되어 있는 정당기관지(당보)를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 정당이 일부 지면에 소속 예비후보자들의 각오 인터뷰를 게재한 정당기관지를 소속 당원과 종래의 배부대상인 유관기관의 장 등 제한된 범위의 외부인사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 다만, 선거기간 중에는 법 제139조를 준수하여 발행·배부하여야함.
-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공공법인의 장이 선거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이나 법인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당기관지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그 인터뷰 내용이 기관지에 게재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다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







제4장

교육감선거 관련 특별 제한 · 금지사례

- 1.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 2.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 금지
- 3. 교육감선거 관련 주요 특례 규정
- 교육감선거에서는 선거법을 준용하는 조문이라도 그 일부 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교자법'이라함)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교자법 제49조제3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람.
- 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정당추천후보자 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 「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경우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

1.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음.

Tip!

교육감선거에서 국회의원, 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 비서관 · 비서,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방의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정당 소속 후보자가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수동적으로 해당 교육감후보자를 지지 : 반대함이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 ☑ 정당 또는 정당 소속 후보자가 교육 관련 정책을 제시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정당 소속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원 및 당원협의회장이 교육감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감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됨.

- ☑ 정당이 교육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위
- ☑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의 교육 정책을 교육 · 홍보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하 "정당의 대표자 등"이라 함)이 특정 교육감후보자나 그의 정책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 ☑ 정당이 특정 교육감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 図 정당이 교육감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여 공표하는 행위(정당홈페이지 게시,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제공) 및 그 결과를 당원을 대상으로홍보하는 행위
- ☑ 정당 소속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와 함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정당 소속 후보자가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교육감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 포함)·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이하 "국회의 원 등"이라 함)이 교육감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교육감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교육감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
- 図 정당 소속 후보자가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후보자를 지칭하여 그의 정책을 지지 · 반대함으로써 해당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2.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 금지

법규요약 교자법 §46③

○ 교육감후보자(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 · 반대하는 행위
- ☑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정당 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 · 반대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교육감후보자가 특정 정당이나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는 행위
- ☑ 교육감후보자가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책중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 소속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 · 반대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소속 후보자로부터 지지 ·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
- ☑ 정당 소속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 ▼ 정당의 당사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행위
-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정당 소속 후보자와 같은 장소에 구획하여 함께 설치하는 행위
- ☑ 정당을 상징하는 로고·마크. 그 밖의 구호나 표어를 사용하여 외견상 특정 정당과의 일체감을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예) 선거홍보물에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로고를 게재하는 행위. 정당 소속 후보자와 동일한 색상 · 디자인의 윗옷을 착용하는 행위



- ☑ 현수막에 특정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 그 색상의 표현방법이 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 추천받음을 표방함에 이르는 행위
- ☑ 당원 경력을 표시하거나, 당원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직에 종사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 ☑ 정당대표자나 국회의원 · 당원협의회장 등 특정 정당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하거나 함께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교육감선거 관련 주요 특례 규정

- **1. 선거법 준용 시 특례 규정**(교자법 §49③)
- 교육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사무소와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 안에 설치하는 행위 금지
- 선거법 제86조의 적용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원도 금지주체에 포함
-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수여 가능(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 본문 중 '상장'의 제공범위 확대)
- 2. 준용 및 배제 규정(교자법 §49①③)
- 선거운동 및 제한 · 금지에 관한 사항은 교자법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본 자료의 사례는 원칙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감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사례 예시

❷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등록마감 후 추첨을 통하여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정해진 경우 선거벽보,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에 기호나 숫자가 아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의 순번을 게재하는 행위

- ☑ 교육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 표창하거나 상금을 수여하는 행위
 - → 이 경우 해당 교육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여하는 행위는 위법
- ☑ 교육청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장과 부상을, 유공 민간인에게 상장(부상 제외)이나 통상적인 상패를 수여하는 행위
 -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위법
-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정당 또는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찬성·반대하거나 그 사실을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등 법정홍보물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찬성·반대하는 행위
 - → 다만, 표현방법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에 이르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데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주체에 따라 위법
- ☑ 통계청 및 한국통계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에 시·도교육청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입상한 시·도의 학생대표팀에게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 한국통계진흥원에서 시·도교육감상 입상자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도 무방
- ☑ 교육부가「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험 운영계획」 및「2014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확대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청이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교원연수를 실시하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하는 행위
 - → 다만, 연수 또는 설명회 개최시 교원이외에 학부모에게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시달한 기본시책이나 해당 교육청 조례의 근거없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위반
-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체명의로 '어린이 놀이헌장'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를 실시하거나 전국 규모의 국민참여 인터넷 이벤트를 실시하는 행위
 - → 다만, 특정 선거구민만을 주된 참여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교육감의 명의를 밝혀 경품을 제공하거나 당해 교육감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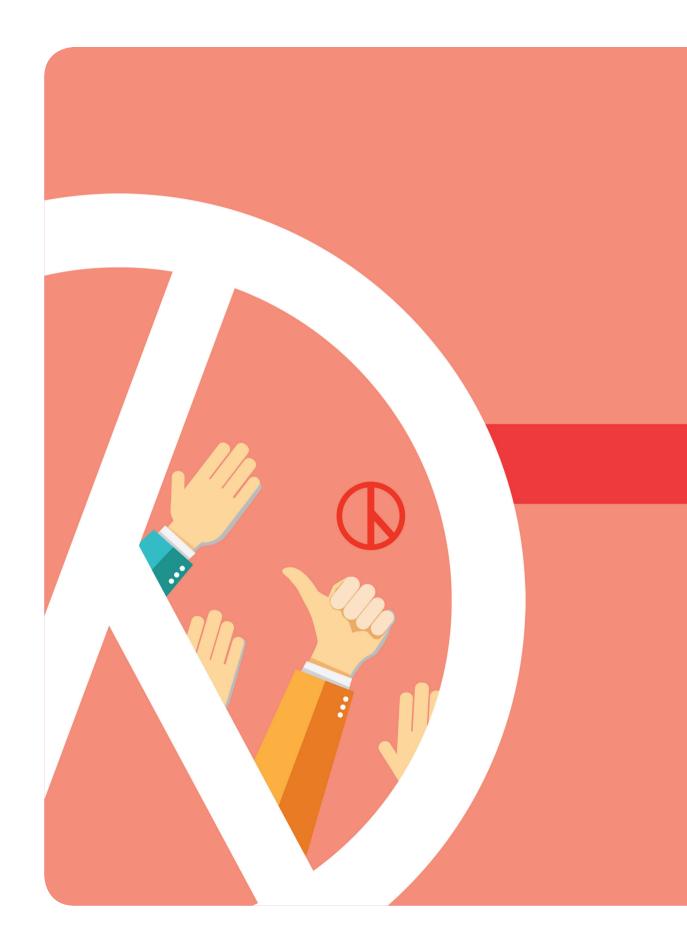


☑ 교육청이 단순히 누리과정 예산부담에 따른 교육재정 위기는 국회와 정부차원의 해결이 필요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내용의 신문광고를 실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경력사항 중 '○○당 ◇◇◇대통령경선후보 교육특보'라는 문구를 명함 등에 게재하는 행위
- ☑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정당 소속인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부터 지지 ·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하거나,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명함 및 홍보물에 당원 등인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교육감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가 되거나 후원금 등의 고지를 위한 안내장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정치자금법」상 제한 · 금지사례

- 1.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 2. 법인 · 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 3.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 4.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 5. 정치자금 회계

1.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및 그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누구든지「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 → '사적 경비'란 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향우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회비, 개인적인 여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함.
 - → '부정한 용도'란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함.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사례 예시

❷ 할 수 있는 사례

- ☑ 공직선거 입후보, 정당의 당대표 경선 등 관련 비용,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의를 위한 심의료. 경선기탁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차입하는 행위
 - →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 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것은 위법
- ☑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소속 보좌관·비서관·비서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이나 사망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소속 보좌직원의 생일에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선거사무소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아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는 행위
-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사진과 후원금 모금 계좌를 게재하는 행위
- ☑ 교섭단체를 구성한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정치자금 통장에서 교섭단체 운영비를 납부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소속 상임위원회의 부처・산하기관・유관기관의 장에게 정치자금으로 취임 축하난을 제공하는 행위
 - → 동료 국회의원 등의 경조사에 정치자금으로 축·부의금 제공하는 것은 위법
-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해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기나 근조기의 제작·배송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 정당이 여성 정치인재 육성 및 전문분야 연구를 통한 정책지원능력 강화를 위하여 자당의 여성 유급사무직원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에게 해당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따른 등록금 등의 교육비를 국고보조금 중 여성정치발전비로 지원하는 행위
 - → 여성정치발전비로 소속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 제작경비 지원하는 것은 위법(국고보조금을 소속 당원에게 지원하는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에 한함)
-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정포럼' 운영회비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투표지 보전신청,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지대, 증거보전과 재검표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 법원 납부 금액 및 변호사비 등 소송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 정당의 여성정치발전비(정치자금법 제28조제2항의 경상보조금)로 소속정당 추천 여성후보자에 대한 선거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개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행위
 - →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 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로부터 30일(30일 경과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봄.
- ☑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경우 1회 12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
- ▶ 누구든지 당직자경선 기탁금을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행위
-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 다만, 정당 대변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변인 논평과 관련한 언론사와의 손해배상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소송결과에 불문하고 정치자금으로 지출가능
-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정치자금 대여자로부터 차입금을 후원금으로 전환하기로 동의를 받고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 ☑ 정당선거사무소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부터 선거운동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행위
- ☒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개설된 의원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제공하는 행위
- 図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여 정당의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단체에 기부하는 행위
 - → 정당의 명의가 아닌 실제 성금을 납부한 자의 명의로 시설 등에 전달하는 경우 「정치자금법」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 ☑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공무원인 보좌관·비서관·비서에게 정치자금으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図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집회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의 후원금을 지출하는 행위
 - → 정당법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 범위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단체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각종 행사 등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행위(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2. 법인 · 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 외국인, 국내 · 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Tip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됨. 즉, 단체의 구성원들이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금원을 갹출한 경우에도 그러한 금원의 모집·조성이 단체의 이름으로, 그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됨.

🖫 사례 예시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직장에서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급여에서 후원금을 공제하여 그 직원이지정하는 후원회의 입금계좌에 후원금을 납부하여 주는 행위
- ☑ 동창회가 동창회보에 단순히 소속 회원인 후보자의 후원회 연락처와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 다만, 동창회보에 후원회 금품모집의 고지목적 범위를 넘어 필요이상으로 자주 게재하거나 후원회지정권자의 성명을 부각시키거나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등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동창회보에「정치자금법」제15조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19조에 따라 광고하는 행위
- ☑ 개인(외국인 아님)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그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관리하는 계좌(개인자금)에서 후원금을 입금하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 ☑ 동창회나 종교모임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 図 동창회 임원이 동창회비와 회원들로부터 갹출한 돈을 특정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고합336)
- ☑ 회사의 이사가 보관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행위(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 ☑ 입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시 납부하는 기탁금의 일부를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지원받는 행위
- ☑ 단체의 사업을 위해 특정 개인이 단체를 대표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그 개인사업자가 단체의 사업을 관리하는 계좌(단체자금)에서 후원금을 입금하는 행위



3.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 지방의회 의장 · 부의장 선거와 교육감을 선출하는 일
 - 공무원이 담당 ·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 국가 · 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 사례 예시

❷ 할 수 없는 사례

- ☑ 공직선거에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등과 관련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
- ☑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행위(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 → 금전반환이 정상적 금전 대여약정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실제 수수한 금전을 반환하는 등 일정한 경우 금원의 반환이 예정되었더라도 당초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은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함(대법원 2017, 2, 17, 선고 2017도628)
- ☑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4.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때 법규요약 「정치자금법」 §33

○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음.

🖳 사례 예시

❷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출신 후보자 ○○○을 후원해 주십시오.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는 ○○은행 000-000-000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올림'과 같이 후원금기부를 안내하는 행위
 - → 다만, 후원금 기부를 단순히 안내하는 정도를 벗어나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하거나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위법
- ☑ 1~2개의 광역시·도 및 2 ~ 3개의 노동조합 등에 「정치자금법」제16조에 따라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에 의한 후원금을 모금하는 자를 지정(위임장 교부)하여 후원금 모금을 위임(3~ 4명 정도)하는 행위
 - → 다만, 후원금 모금과정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위법

❷ 할 수 없는 사례

- ※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지금을 모금한 행위(대법원 2004.4, 27, 선고 2004도482)
- ▼ ○○특송의 부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회장님이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우리회사 □ □지점에서 돈을 모았다. 우리 본사도 성의를 보여야 하니 찬조금을 내라"고 말하면서 본사 영업부 직원 백여 명으로부터 합계 ××만원을 교부받아 대표이사에게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6고단4829)



5. 정치자금 회계

〒 법규요약 「정치자금법」 §36

- 정치자금 수입 · 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
 - → 회계책임자를 신고한 후에는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함(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4721)
 - → 다만,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가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것은 가능
 - →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포괄위임 불가)
- 정치자금의 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 지출하여야 함.
-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

🖳 사례 예시

❷ 할 수 있는 사례

- ☑ 회계책임자 선임권자가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정치자금 지출을 위해 신고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신용카드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
 - →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라도 정치지금 수입처리는 불가
- ☑ 예비후보자등록 전부터 자동이체(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여부 불문)를 통해 납부해 온 당비를 지출하는 행위
- ☑ 회계책임자가 직접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 그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주어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관위에 신고 된 계좌에서 해당 증빙서류에 기재된 대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도6937)

- ☑ 경선후보자후원회 등록 전에 경선후보자가 경선기탁금을 차입금을 통해 지출하고, 후원회 등록 후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그 차입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행위
- ☑ 정당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의 대담 내용을 서적으로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과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수입을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수입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 후원회를 둔 공직선거 후보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후원회 등록 전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여론조사비용을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실비를 해당 선거사무관계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행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 12. 14. 선고 2004고합 118)
- ☑ 회계책임자가 아닌 선거연락소장이 중앙당의 지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행위(전주지방법원 2005. 5. 2. 선고 2005노257)
- ▼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 된 통장 외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수입 · 지출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5노205)







-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 2. 시기별 주요 제한 · 금지사항
- 3.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이해유도 요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4. 금품 ·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5.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신원보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상시		- 기부행위 제한 · 금지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 금지	상시	법§112 법§86①1,2.3 법§86⑦
2017. 12. 15. ~ 2018. 6. 13.까지	금수	-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금지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90 법§93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13.부터 6. 13.까지	화 수	창당대회 등 개최장소, 참석대상, 고지방법 등 제한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40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ㆍ도의원, 구ㆍ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 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 우 선거일 전 30일까지(5.14)]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 수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 의정활동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3⑤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 ·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법\$108②
5. 14.부터 6. 13.까지	월 수	당원집회 개최 금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41①
5. 24.부터 5.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	법§33③
6. 7.부터 6. 13. 18:00 까지	목 수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 · 인용보도 금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108①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48①
6. 13.	수	투 표(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14.부터 6. 26.까지	목 화	현수막 게시를 통한 당선 · 낙선사례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동안	법§118



圖 부록 2 ๋

시기별 주요 제한 · 금지사항

1 상시 제한(언제든지)

기부행위의 제한

- 야유회 · 관광 · 체육대회 · 등산대회 등의 행사에서 금품 등 제공 금지(법 §112)
- 축 · 부의금품등의 제한(법 §112)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금지(법 §113)

공적지위 관련

- 공무원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9)
- 공무원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5①)
- 공무원등의 선거관여·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법 \$85②~④)
-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①1·2·3)

단체활동 관련

-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금지(법 \$87①)
- 선거운동 위한 사조직 설립·설치 금지(법 §872)
- 후보자를 위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법 §89①)

1KN 1.2

언론활동 관련

- 신문 · 잡지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등 금지(법 §95)
- 허위논평 · 보도등 금지(법 §96)

기타 상시제한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법 §91)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금지(법 §106①)
- 선거운동을 위해 서명 · 날인 받는 행위 금지(법 §107)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신고(법 §108③)
- 특정 지역 · 사람 및 성별 비하 · 모욕 행위 금지(법 §110)
-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법 §230)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 교란 행위 금지(법 §244)
- 허위사실 공표 금지(법 §250)
-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금지(법 §251)
- 사전선거운동 금지(법 §254②)

2 특정 시기 제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7. 12. 15.~ 2018. 6. 13.)

- 정당 · 후보자가 설립 · 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법 §89②)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 등 금지(법 §90)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법 §93①)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2, 13.~ 6, 13.)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법 §140)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3. 15.~ 6. 13.)

- 정당 ·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기타 물품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법 §93②)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법 103⑤)
- 국회의원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111)
- 정강 · 정책의 신문광고등 제한(법 §137)
- 후보자의 방송출연 금지(「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1)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4, 14.~ 6, 13.)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②)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법 \$108②)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5. 14.~ 6. 13.)

■ 당원집회 · 당원교육 등 금지(법 §141)

선거기간 중(2018, 5, 31,~ 6, 13.)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①5 · 6 · 7)
- 저술 · 연예 ·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92)
-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법 §99)
- 녹음기 · 녹화기 등의 사용금지(법 §100)
- 타연설회 등의 금지(법 §101)
- 야간연설 등(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의 제한(법 §102)
- 각종 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 제한(법 §103②③④)
- 입당권유, 공개장소 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제한(법 §106①③)
- 정강 · 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 · 배부 제한(법 §138 · §139)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제한(법 §144①)
-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법 §145①)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2018, 6, 7,~ 6, 13, 18:00)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법 §108①)

선거일(2018, 6, 13,)

-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 금지(법 §254①)
-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법 §167②・§241①)

3 선거일 후 제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법 §118)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 · 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 법 \$79③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2018. 6. 14.∼ 6. 26.) 읍 · 면 ·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



■ 부록 3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이해유도 요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법규요약**(법 §261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양태	부과 기준액
1. 금전 ·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요구액을 알 수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요구한 가액의 50배
2. 금전 ·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요구액을 알 수 없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2회 이상 계속적으로 요구한 경우나. 1회성으로 요구한 경우	5,000만원 2,500만원
3. 공사의 직을 요구한 경우 가. 구체적인 직을 제시하여 계속적으로 요구한 경우 나. 1회성으로 요구한 경우	5,000만원 2,500만원

圖 부록 4 집

금품 ·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법규요약**(법 §2619)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됨.

2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양태	부과 기준액
 1.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금전 · 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 · 권유 · 요구하는 행위 나. 금전 · 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 · 집회 및 행사를 주관 · 주최하는 행위 다. 금전 · 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 · 집회 및 행사에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전 · 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30배
3.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경조사에 축의 · 부의금을 제공받거나 법 제261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 · 물품 등을 우편 · 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3 사례 예시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단체로부터 총 1,348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17명 → 총 11.420만원 1명당 36만원 과태료 부과
-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총 354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고속버스회사 직원 및 초등학교 동문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민 78명 → 총 8,132만원 [1명당 100만원] 과태료 부과
-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후 지방의원으로부터 2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61명 → 총 6.388만원[1명당 105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원씩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명 → 총 6.000만원[1명당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280만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3명 → 총 3,140만원[1명당 136만원] 과태료 부과
-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개당 4만원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 → 총 2,960만원[1명당 23만원] 과태료 부과
-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장아찌 세트 18천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 → 총 5.229만원[1명당 17.8만원] 과태료 부과
-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는 대가로 총 149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26명 → 총 2.957만원[1명당 128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3자로부터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받은 대학생 37명 → 총 2,055만원[1명당 56만원] 과태료 부과

圖 부록 5 〕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신원보호

1 **법규요약**(법 §262의2·§262의3)

-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함.
 - →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만 해당됨)이 있는 경우와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거범죄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

2 사례 예시

- 포상금 3억원 지급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직선거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심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2억원 지급 기업대표가 국회의원후보자에게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6,000만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1억 5천만원 지급 노동조합이 노조자금으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등에게 선거경비 등의 지원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2천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1억 2천만원 지급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3,900여 만원 지급 및 당선 시 보좌관 직 제공을 약속하고, 자원봉사자는 예비후보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액 중 550만원을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1억원 지급 예비후보자가 동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조건으로 선거준비에 소요된 비용과 향후 인사권 등 군수 권한의 1/3을 주기로 약속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8,000만원 지급 예비후보자가 조직책에게 선거운동 조직 구성 및 활동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7,430만원 지급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사조직을 결성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8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5,500만원 지급

예비후보자·배우자·자원봉사자 등이 공모하여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 선거구민 30여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5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5.000만원 지급

- 후보자의 측근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5명에게 구전홍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한 자원봉사자 6인에게 총 1,22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후보자가 정당선거사무소장에게 당원관리 및 조직관리 명목으로 현금 3,1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후보자가 읍 · 면책임자 등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제출하면서 신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발 행 2018년 1월

발 행 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

편집·인쇄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비매품〉